

忠清北道教育委員會會議錄

(第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개회식.....	3
2.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
3.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51
4.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115
5. 부 록	
가) 의사일정(안).....	129
나)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131
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5
라)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안).....	145

제 8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 회 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2년 3월 26일 (목요일) 14시 00분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의장)
6. 교육감 인사
7. 폐 식

(사회 : 의과과장 이영규)

(14시 개식)

○ 의과과장 이영규 : 지금부터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 주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

.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전주에 따라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묵 념

(녹음 주악)

. 바 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그리고 정인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만물이 약동하는 화창한 3월에 본도 제8회 교육위원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본인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교육자치제도의 정착과 본도의 교육창달을 위해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당면한 교육현안의 해결에 온갖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50만 도민이 열망하는 지방교육의 정착과 발전은 제대로 이룩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교육청 관계관들의 인식전환을 요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 합의제 집행기구였던 교육위원회라는 타성과 교육자치제의 이념을 망각하고 중앙정부의 지시일변도에 영합하는 관료적 습성을 하루속히 씻어 버리고, 이제는 150만 도민의 대의기관이요, 의결기구로서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권능을 존중하시어 당면한 교육현안과 공동과제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자세로 풀어가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 주시고 교육위원회의 위상정립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회기에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150만 도민과 함께 풀어나간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서로 채찍하고 격려하며, 협조하고 지원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자치의 절대적 명제인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교육행정 전반에 과감히 확대시키고, 참된 민주교육과 충북교육의 선진화를 조속히 이룩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본도의 지방교육창달을 위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관계서는 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다음은 교육감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교육감 정인영 : 존경하는 김영세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너무 오랫동안 모시지를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월초에, 우리 교육계는 3월이 학년초이기 때문에 만 달에는 몰라도 3월 만큼은 월초에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의 방향을 위한 진지한 협의를 갖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외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순서가 거꾸로 돼서 3월초에 각 시·군마다 순회를 하면서 우리 증북교육의 방향을 협의하고는 했습니다.

응당 교육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보다 더 폭넓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포함된, 이와 같은 협의회가 이루어졌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시·군 순회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같이 참석을 하시고, 환영을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동안의 고마움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요지를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내용은 시·군마다 다니면서 증북교육의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 중요 요점만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드리므로써 본인의 인사로 가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92학년도를 교육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이와 같은 해로 정했습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회나, 또는 산업현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변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계가 사회발전에 앞장을 서서 사회발전을 리드해야만 될 형편입니다마는 오늘날의 교육계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사회발전, 산업발전에 뒤떨어져가는 이와 같은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계도 그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교육계가 제도약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 하에 금년도를 교육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계획을 추진하는, 이와같은 해로 정했습니다.

주로 그 언더라인 친대를 중심으로 해서만 것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줄친 부분에 걸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학교의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됩니다.

이 결과로 학생들은 만6천778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 금액상으로는 33억4천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이 금액을 학생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해 보았더니, 19만3천9백원씩 학생 1인당 학비감면의 혜택이 돌아 간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무교육의 확대 실시로 인해

서 국민들의 기초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또 어려운 농촌에 학비감면의 혜택이 돌아가서 농촌의 복지증진에도 그만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교육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또한 우수 교원을 많이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직사회를 안정시켜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부형님들이 대부분인 국민들로부터 우리 교육계가 존경받고, 신뢰받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만 되겠습니다.

교육은 존경과 신뢰받지 않는 곳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투자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실시해서 교육여건을 개선시켜야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환경개선 특별사업의 마무리 해입니다.

물론 3년 계획이 금년에 마무리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실시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3년 계획의 마무리 해이기 때문에 적제적소에, 필요한데 적절한 예산부자가 돼서 교육여건 개선이 극대화될 수 있

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두번째가 21세기에 대비하는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사회나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육계가 이에 기술인력을 제대로 양성해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학과를 신설하거나 개편하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도 더욱 확대해서 실시하브로써 산업현장에 기술인력 공급에 최선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지역간에 경쟁의 시대가 전제라고 할 것 같으려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자율적이면서도 경쟁적인, 이와 같은 질적인 관리체제가 확립돼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시·군마다 다니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학교별로 특색있게 학교를 발전·신장시키는 작업, 이것은 학교장과 학교장을 중심으로한 교직원의 단합된 역량에 의해서 좌우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별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또 상호 경쟁적인, 이와 같은 관리체제 구축에 전력을 다할까, 그래서 특색있게 학교나름대로의 발전·신장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의 국제정세도 공산체제의 붕괴와 더불어서 국제사회에서도 재정립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남북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육제도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그와 같은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겠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또는 준법과 질서, 남의 의사를 존중하는 등등,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학생들에게 심도있게 심어주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발전의 기반 확충과 교육계획의 전개 하에서 다음 장에 있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육현장에 있어서 당면한 과제가 뭔가, 이것을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에 있어서 전인교육 부재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교육은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운영을 함으로써 전인교육의 실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급 학교에서 상급학교 진학에 급급한 나머지 전인교육이 소홀히 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상급학교 진학제도가, 입학제도가 각

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대학입시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본도에서는 타도의 하는 것에 눈치보지 않고 나름대로 고교입시 제도를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 개선방향은 다음 장에 '93년도 고등학교 입시방법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이미 여러차례 보도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합니다.

이에 덩달아서 청소년의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내들이, 지도자들이 새로운 도덕적인 자각이 전개되어야만 되겠다, 지도자급에서 바른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 후배 학생들에게만 어떠한 생활을 강요한다는 것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각종 청소년 단체에 가입을 함으로써 자기의 심신단련은 물론 자제력, 지도력, 봉사하고 협동하는 정신을 길러주는 데 최선을 다 할까, 이러므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사회문화

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가 교육자치제의 정착이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우리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자치면에 있어서도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장님께서 강조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전환과 지방자치에 대비하는 자질향상이 선행되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가 지방간에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만은 간절하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3월 5일자 조선일보 1면에 아주 대서특필해서 난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과대학 학생 1인당 1년간 교육비 투자를 일본에서는 만8천달러를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천4백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7.7% 돼요.

연간 만8천달러 교육 투자를 받아서 교육을 한 학생들이 사회 산업현장이나 연구소에 가서 활동해서 이득하는 성과와, 천4백달러 투자 받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이득하는 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리라 하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이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공업대국으로 세계에서 휘고 제치고 돌아 다니는 이유가 바로 교육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도내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따르는 적절한 교육을 해야만 되겠다 하는 걸 절실하게 느끼면서 3월초에 저희 교육계의 앞으로 방향을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므로써 인사로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이상으로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4시 20분 폐식)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2년 3월 26일 (목요일) 14시 20분

의 사 일 정 (제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안상정
 - 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안)
 - 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 (안)
 - 다.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 및 처분 (안)
3.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 (의사과장)
2.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권력옹위원의 3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교육감 제출)
5.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 및 처분안 (교육감 제출)
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7.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 답변

(14시 20분 개의)

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 21분)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회기인 제7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 처리 결과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이 심의·의결되어 도의회에 제출되었고, 도의회에서 지난 3월 7일날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 3월 20일날 공포, 도보에 게재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집행기관에서 3월1일자로 괴산교육청 장병은 교육장을 영동농공고교장으로 전보하고 괴산중학교장이던 손만재 교장 선생님을 괴산교육장에 임용했습니다.

세번째 제8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립니다.

3월 12일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과 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물품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안, 이 조례가 들어 왔었습니다마는 야영장에 대한 것은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바 대로 야영장은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그 설치계획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6항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동 설치 계획서 제출없이 조례안만 직접 제출되어,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처리할 계획임을 밝혀 유보할 뜻을 공문으로 교육청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이 권혁풍 위원님 외 세분 교육위원님이 연서한 발의로써 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직접 의제와 상관 없는 3월 28일 직속기관 방문은 휴회중인 3월 28일 토요일 10시에 학생회관과 11시에 교육연구원을 방문하실 계획이 서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23분)

2.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리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바와 같이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권혁풍위원 외 3인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

태중개정조례안 등의 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감의 제출의안중 충청북도 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번 회기에는 상정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이미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당연히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본 야영장의 경우 그 설치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없이 조례로 직접 다룬다는 것은 이러한 법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 외에도 안전 심의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기에, 다른 공공시설의 설치등에 있어서 앞으로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상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92년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6분)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인 권혁풍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사회대로 나옴)

○ 권혁풍 위원 : 권혁풍 교육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오늘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사국 직제 조례를 발의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9월 교육위원회가 개원되어 지방교육자치가 정착의 단계에 접어들은 이때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사국 직제가 확정되게 됨은 지방교육자치의 완속을 위한, 또 한 걸음의 진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간 의사국 직제 조례안의 마련을 위한 전국 의장단 협의회와 의사국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사국 직제안이 발의 되고, 오늘 제안설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주요골자와 참고 법령, 그리고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첨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같으므로 기재 생략)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본 조례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 의사국 직제를 정하는 규칙을 이 자리에서 다시 제정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 외 3인의 교육위원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상에는 의사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사무직원의 정수만을 규정하고 하부 조직은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은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사 34분)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기재 생략)

개정근거 및 관계 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고, 참고로 충청북도 도청의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미 도의회를 통과하여, 충청북도 조례 제1974호로 '92년 1월 31일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도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7분)

5.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
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
항 '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
대상물품취득및처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
니다.

(관리국장 계속 발언대에서 답변)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3호 의안인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
상물품취득및처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첨 '92년도 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안과
같으므로 기재 생략)

이상으로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페이지 나항에 품목별 내
역증 일련번호 3번에 대형승합차의 취득가
액이 8천7백만원인 것이 8백7십만원으로
잘못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정정하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과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보충.....

(의사과장 위원석을 돌면서 금액정정후)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의결도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
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위원
발의로 제안되었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
육부 준칙에 의거 임대료 또는 사용료가
급등한 재산에 대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관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심사 소위원회의 구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위원 혹시, 다른의견 있으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등은
본회의에서 직접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1분)

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회의록 서명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제회위원, 권력풍위원 두 위원을 선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이재희, 권혁풍 두분 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2분)

7.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답변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9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시다'라는 3월은 신학년도가 개시되는 중요한 시점임을 염두에 두시고, 평소 가지고 있던 의문과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방향을 기탄없이 개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문이 있기 전에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3분)

(14시 55분)

○ 의장 김영세 :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 진행은 의석 순으로 하기로 돼있습니다. 이는 교육감님 형편에 의해서 교육감님이 직접 답변할 사항을 먼저 질의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답변은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안건에 대한 두번 이상 질문은 없겠고, 또 소요시간은 20분 이상을 소요하시면 안됩니다.

의사진행 규정에 의해서 소요시간 20분, 또 일괄질문·일괄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 순서를 좀 바꾸어서 교육감님이 직접 답변하실 사항을 가진 위원부터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풍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예, 권혁풍입니다.

제가 우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학생회관장을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자" 라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켜서 도의회에 제출했습시다라는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해서 우리의 목적이 좌절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교육감님의 고견이 어찌신가를 재차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내용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학생회관장 및 충북학생종합야영장장을 일반직으로 보임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배치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질문의 성격상 교육감님이 답변하시기는 조금 그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우선 교육감님한테 좀 무리를 무릅쓰고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헌법소원의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 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시도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시도하기 전에 우선 교육감님의 고견이 어떠신가 하는 것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28조 제2항에 의한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도의원에 의해서 교육위원이 선출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인 목적이지요, 즉 자주성·전문성의 기본정신과 서로 모순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헌법 제31조 4항에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정신에 배치된다고 생각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은 이 두가지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더 이상 없지요?

○ 권혁품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그럼 다음은 이재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 예, 저는 교육감님께 질문이라기 보다는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날 제천에서는 학원연합회 주최로 지방인사 초청 간담회가 열린 일이 있습니다.

그 초청대상이 교육위원, 도의원, 시의회의장 이었는데 그 관계관 설명이 학원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귀빈들 중에 축사를 교육위원한테 부탁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질의도 교육위원한테 가장 먼저하는 걸로 봐 가지고 관계관들이 교육위원에 대한 예우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7일 교육감님이 제천교육청 방문시 그 초청대상이 초·중·고등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인사이동도 있고, 또 그런 기회에 지역대표로서 교육장 및 교장들에게 인사할 기회도 갖으려고 학무과장한테 교육위원 인사하는 순서를 좀 넣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당일날 아침에 수행국장 답변이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식순에 넣어 줄 수 없다

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3월 20일날 학생회관 개관식에 교육위원들이 초청돼서 원근에서 7,8명이 왔었는데, 당연히 주민의 대표인 교육위원회 의장의 축사 순서도 있었어야 되는데.....

뭐 여러가지 시간이나 문제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앞으로 교육위원이 초청되는 행사에는 교육위원 축사나 또는 인사의 순서를 넣어 주었으면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다음에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목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처분은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포함한 각 기관의 설치는 계획안이 당연히 교육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되어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음성교육청 관내 야영장 설치계획은 이런 절차없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개정조례안만 여기 제출

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이 건을 비롯해서 향후 학교를 포함한 제 기관을 설치할 경우, 어떠한 절차로 처리할 계획인지 명확한 답변을 구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 외에도 교육위원회 의결사항과 교육감 관장사무의 중복사항을 어떻게 해석·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구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지금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건에 속하는 내용이 여기 "제13조 제1항 제3호와 제27조 제13호", "제13조 제1항 및 제4호와 제27조 제15호"가 있습니다.

더 거기에 설명을 구한다면 이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및 처분" 이외에도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이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감의 권한에도 속해 있는데, 이 음성야영장의 설치내용을 추진중에 관계 직원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것도 본도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타도에서 질의한 질의 조부서를 참고로 해서 마치 교육위원회의 권한이 아닌양 유추해석을 해 가지고, 그 유추해석으로 인하여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질의 조부보다도 선행되어

야 할, 우선하여야 할 이 명문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조례안만이 교육위원회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위원으로서 그 설치계획안 조차 모르고, 그 설치장소 조차 모릅니다.

설치장소도 확인하고, 그 계획의 타당성을 알아야 조례안을 개정해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것 등의 절차가 전혀 빠져있고 조례안만이 상정되어 왔다는 점,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앞으로 교육감께서 어떻게 이것을 인용해서, 해석해서 조치할 것인가 하는 의견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유추해석을 해가지고 의사표시 상에 하자를 범했어요.

그러면 공부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의 하자행위는 어떻게 응당한 처분을 할 것이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하는 점, 이 점까지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교육감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고, 다음은 일반적인 관계관께서 발표하실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교육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교육감님 말씀하세요.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교육감 정인영 : 일괄질문·일괄답변

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교육감이 답변할 사항을 일괄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감이 답변할 사항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일괄해서 오늘 답변드리는데, 찬밥 놓고 잠한숨 못자는 것과 같아 답변드리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의장 김영세 : 어떻게,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그냥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하세요.

○ 교육감 정인영 : 감사합니다.

처음에 권혁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회관 설치조례를 제정할 당시, 그 관장을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하도록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셨고,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고 해서 지방서기관만으로 임명하도록 해놓은 것,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앞으로의 처리방안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뭐 단일 직종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복수직으로, 당초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신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

진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교육위원을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도의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헌법이나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견을 밝히려는 내용 이 있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제1조에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제정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제5조 제1항에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의회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다." 이렇게 돼있고, 이에 보며는 "도지방의회의 의원은 정당의 당원일 때는 소속 정당의 추천서를, 정당의 당원이 아닐 때에는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200명이상 300명이하의 기명날인한 추천장이 첨부돼야 된다." 즉 정당가입자도 도의회 의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또는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느냐?"

이런 질문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제님께 교육감이 이 교육위원 선출이 헌법에 위반됐다, 안됐다라고 답변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입장이어서, 본의 아니게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두고, 근본적인 정신은 정치인이 교육위원을 선출했다라도 선출된 교육위원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켜서 교육·학예에 관한 제반 발전을 도모 해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예로, 우리 충북의 교육위원 열한분들이 정당에 가입된 도의원들이 선출을 해주셨다 하더라도 현재 오늘 날까지 몇 개월 동안에 교육·학예에 관한 심의를 하실 때에 "자주성과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잘 보장 해 주신 것도 하나의 좋은 증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누가 선출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위원님들이 이와 같은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희위원님께서 제천서 있었던 사항.....

이것은 제천 현장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와 같은 지방순시 때에 교육위원님이 같이 참석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게, 반갑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옥천의 경우에는 부의장님이 저희들 초·중·고 교장 간담회에 처음부터 한시간 여에 걸쳐서 끝까지 같이 참석을 해주시고 또 좋은 결론의 지도 조언 말씀까지도 해주신 실질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제천에서는 이것이 아마 해당지역에서 생각을 잘못해서 소홀히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3월초에 교장들이 많이 이동되었는데, 교육위원이 참석하셨다면 당연히 인사소개가 있었고 하는 절차는 당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에 교육위원회 의장님이 참석하시면 축하를 하시는 것, 당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처분"에 관한 질문을 두가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두가지를 한데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를 보려는 여기에는 교육감의 관장 사무에 관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교육감이 관장하는 모든 권한은 단독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법률이나 조례나 기타 여러가지 규정에 포함돼 있는 범위내에서 권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당연한 일이라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27조에 의한 교육감의 사무관장 사항도 제반 법률이나 조례나 기타 규정에 의거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또 앞으로 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그 권한 제13조 제1항 제6호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은 당연히 사전에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에 의해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또 다시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로 알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성 야영장 설치에 관한 한은 이제까지 하던 관례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교육위원회에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

부에 승인을 먼저 맡은 것, 저희들이 절차상의 잘못이 있었다 하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전심의를 거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조례개정안으로 처리하고, 그 조례나 법률이나 제반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다른 위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내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아니 권위원 먼저 보충질문.....

○ 권혁풍 위원 : 제가 먼저 질문한 그 학생회관장 건, 거기에도 동의를 표해 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강구하시는데 그냥 막연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겠다,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좀더 그 구체적인 대책, 앞으로 언제까지 한다던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좀 가지적으로 보여주셨으면 고맙겠고, 물론 그 조례가 먼저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감님이 노력을 하실건가 저희들은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 교육감 정인명 : 그 시기적으로는 도

의회하고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의견에 차이점도 있었고 해서 최단시일 내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며는 또 심리적인 어떠한 갈등도 있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추진방법이 아닌가, 그 일을 올바르게 성사시키기 위한 현명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드렸던 그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말씀인데, 물론 교육감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리 정치인이 뽑았다 하더라도 교육위원 스스로가 중립을 지키면 되는 건데, 뭐 제도에다가 모든 걸 평계를 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있는데, 물론 그 제도라는 것도 법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운영을 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법제도가 완벽하게 돼있어도 어려운데 이렇게 완벽하게 돼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장 그 정치적으로 교육이 침해 받을 위험성이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그러한 제도하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은 도저히 이루어 지기 힘들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들 우리 스

스로가 어떤 정당에 연루가 됐다던가, 간여가 됐다던가 해서 서로 정당차원에서 문제가 벌어졌다 할 때를 상상할 때는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할 때에 보다 법제도적으로 좀 완벽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교육감 정인영 :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요건에는 이 중복된 사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했는데, 물론 교육감님의 의지가 우리가 생각한대로 그 내용을 바른대로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 교육감님께서 관장하는 권한이라는 것이 모두가 법에 근거하고, 조례에 근거한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정하여진 조례이면 그 조례를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육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닌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바른대로 해석했으니까 그 교육감님의 의지를 믿겠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에 얘기한 중에서 교육감님의 해명이 한가지 빠졌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타도에서 질의한 질의조복서를 가지

고서 유추해석을 하여서 일종의 하자를 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느냐는 것과, 또 잘못됐으면 솔직히 이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고, 또 이 행동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정인영 : 예, 먼저 답변중에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해당 공무원들도 이제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던게 아니고, 판례적으로 사전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교육위원회 조례개정으로 심의를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알고 그렇게 한 것이지 고의적인 어떠한 과실은 없었다고 봐서, 해당 공무원이 저한테 설명을 할 때에도 타시도에서 교육부에 질의조복한 것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얘기하길래, 교육부의 해석 자체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중한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 지금 내가 질문한 건 관계직원에 대해 처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관계직원의 인식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내가 이것을 집어서 그 관계직원한테 의견을 청취할 때, 본인이 의당 교육위

원회를 경유해야 할 것을 본인의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잘못돼서 빠트렸다고 본인이 사과를 했다면 그것으로 끝났을 문제인데, 끝까지 교육부의 질의조복서를 가지고 항변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항변했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도 어떤 문제를 유추해석을 해가지고, 이러한 의사표시도 일종의 하자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자를 범했을 때는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이 솔직히 자기 과실을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발표해 달라는 겁니다.

○ 교육감 정인영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주 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장충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예.

○ 장충호 위원 : 교육감님께서도 집행부의 총수이시고, 하부의 직원들이 잘못된 게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저로서 한마디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권혁풍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때 사항이 한번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조금 흥

분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돼가지고 또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 의장님의 인사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종전의 타성이 아직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잔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毒藥이 苦口하나 利於病이요, 忠言이 逆耳이나 利於行"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하고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롭고, 충성스런 말은 행동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 열 한 사람의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에서 얘기하는대로, 그대로 그냥 아무 비판 없이 따라 간다면 순전히 맹종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이런 점은 이런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한다면, 교육감님께서 산하 직원들한테도 이제 교육자치제가 되는 마당에 있어서 항상 다 른 시·도의 예를 들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좀 한발자국 앞서서 민주화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교육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은 우리가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도, 의당 교육감님 고유권한으로 능히 할 수 있는 것도 교육위원회라는

것이 생긴 이상에는 일단 이러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 한마디 전해 준다면 그 일을 서로 알고, 유대가 강화되고 잘 이렇게 되나갈줄 압니다.

꼭 이걸 내 권한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가정도 화목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물론 교육청의 예산관계라든지 모든 걸 감사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사실은 한 배를 타고서 뭔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감님께서 산하 직원들에게 정신적으로 좀 개혁을 시켜서, 이제 우리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에 알려져 대·소간에 이렇게 해서 서로 손잡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감 정인영 :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더 교육감께 질의하실 것은 없으시죠?

○ 장충호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감 정인영 : 예.

○ 의장 김영세 : 고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만 응무 있으시면 보시죠.
(교육감 퇴장후)

그러면 다음 질문에서부터는 관계관이 직접 주무국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사항 먼저 일괄질문으로 진행되니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예,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이와 같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충북교육을 담당하시고 날마다 수고하시는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이하 실무담당관들에게 그 간의 노력에 치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그냥 이렇게 잘 모르는 것 묻는다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서는 학교주변 환경정화 실태에 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북교육의, 초·중·고 학교 주변에 유해환경이 그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동안에 정리된 것은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 꼭 정리해야 할 것이 얼마가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리해야 할, 그러한 유해환경 업

체가 있을 적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까지는 정리 해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또는 기한을 설정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언제까지면 우리 충북 교육 주변에 있는 이러한 불량 환경업체들이 정리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몇 개소가 있었는데 얼마 정리가 됐고, 지금 현재 얼마가 있는데 언제까지는 정리가 될 것이다, 이것을 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시·군교육청에 인사담당자가 일반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먼저 번에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요번 2월말 인사에도 직접 이 분들이 관여가 돼서 인사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일반직으로 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가, 또는 그 분들로 하여금 인사를 담당함으로써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알기로서는 일부지역의 일반교사들이 불평하는 그런 얘기를 사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타시·도, 지금 현재 충북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도 그 인사담당자가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충북만이 유독이 지금 현재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안하고 있는데도 충북만큼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달리 생각해 볼 수 없는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전국소년체전이 금년부터 부활이 돼서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소년체전이 실시 되다가 그 동안 몇 년간 중단을 했다가 다시 부활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운영 할려고 하려는 역시 그 시·도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또 뒤따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 집니다.

거기에 제일 큰 것이 소년체전을 하는 것이 때문에 어떤 점으로 봐서는 근본적인 체위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볼 적에는 시·도 경쟁이 되리라고 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가장 염려스럽고,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하나는 선수선발 문제가 되겠습니다.

육상같은 것은 자기 혼자하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 구기종목으로 단체 선수를 요하는 것들, 농구를 한다던가, 축구를 한다던가 할 때는 그 어느 학교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 학교의 학생중에서, 저 국민학교

같으면 4학년이상 정도가 되겠고, 또 중학교 같으면 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포괄해서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한 학교에, 예를 든다면 뭐 청주의 어느 학교 하나, 여기서 한다고 할 적에 구기종목하는 전 학생이 다 거기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다른 학교에서도 픽업을 해서 운영을 해야되지 않겠는가도 봐 집니다.

만약에 그 학교, 한 학교의 학생만 선발해서 한다고 할적에는 뭐, 이런 소년체전에 조그만한 학교는 감히 참여하려고 생각을 못 하고, 그래도 학생이 몇 천명 이상되는 그러한 학교에서만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고, 또 그 학교주변에 우수한 학생이 축구를 한다든가, 농구를 한다든가 우수한 학생이 있다고 할 적에 픽업을 해서라도 이걸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어떠한 요령으로 어떻게 앞으로 하실려는가 그런 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지금 현재 교육대학에 학생 모집하는 현황을 보려는 뭐 남, 여 모집이 돼있는데, 금년도 현황을 보더라도 여학생이 90%이상입니다, 학생중에.

이렇게 볼 적에 앞으로, 특히 국민학교, 교육대학은 국민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학교의 거위가 여선생님으로

다 매꾸어 진다고 할 적에, 유치원에서도 여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이렇게 볼 적에 우리나라의 앞으로 교육에 유치원도 여선생님이 담당하고, 국민학교를 전부 여선생님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당해서 냈을 적에 한참 성장해야하는 학생들에게 여성화 경향이 될 염려는 없는가,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는 그 대책은 어떤 방법이 또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민학교가 많이 시골로 박서는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폐합이 되고, 촌 학교가 본교가 됐다가 그 다음에 폐교가 돼서 거기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학생들을 지금 현재 통학버스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통학버스가 대·중·소해서 몇 대나 되고, 그 동안에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떠한 장·단점이 나타났는가, 또 이것이 장점이 많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시골에 조그만한 학교는 차라리 폐교를 하고, 이러한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교육의 질적 향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 학교장 근무지 상주라고 하는 것이 먼저 교육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적에 충청북도에 지금 현재 초·중·고교장이 그 근무지 학교에 상주하는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상주하는 것이 학교주변에 있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통근거리 가능한 지역에 있으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며는 시·군을 볼 적에 군단위를 볼 적에는 그 군내에만 거주하면 상주하는 걸로 간주하는 건가, 그 상주의 근본적인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주요업무 보고 사항에 그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교보편이 꽤 좋아졌기 때문에 도시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거개가 다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옥천군의 실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전에 가깝고, 또 청주에서도 통근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통근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수업이 끝난 오후에 또는 야간에는 공동화, 그러한 문제도 생겨서 청소년 또는 학생의 교외 생활지도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을 그 학교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겸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장 임기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장 임기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4년간하고 1차에 한해서 증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4년, 4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이 오는 그런 관계를 잘 모르리라고 봐 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볼 적에 보편적으로 교장선생님이 될 적에 연령이 몇세 정도에서 교장이 돼서 그 임기를 한 번을 1차에 한번치룰 것 같으면 4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4년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65세에 정년이라고 할 적에 한 60세에 교장이 되어서 나갔다고 할 적에는 64세에 끝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한 1년이나 2년, 한 3년 남았을 적에 또 2차 교장으로 서 발령을 할 수가 있는 건가, 4년 다 임기가 돼야지만 되는건가, 이것이 꽤 염려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적에, 조합이나 이런 곳의 그 조합장 선출과정이라든가, 그 전에 임명제도가 있을 적에는 보통 61세로 보고했는데 58세에 조합장이 될 적에 3년이나 4년이 됩니다.

그 정년내에 그 임명을 받으면은 정년이 넘더라도 그냥 그 조합장의 직무를 했습니다.

그 넘은 사람에 한해서는 그 임명을 안했

지요, 그런데 이 교장 임기제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이 될 것이며, 또 그것의 장·단점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염려스럽고,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도서관이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옥천군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조그만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어떤가 싶어서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자리가 298석이 있어서 요즘같이 개교가 됐을 적에는 별문제가 안됩니다마는 방학때 보니까 학생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열을 지고 있어요.

그 자리가 모자라서, 그 도서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열을 지고서 자리가 자기 순번이 되려는 참 그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앞에 많이 온 사람이 있어서 자기 차례가 안되려는 그냥 가방을 들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을 좀 옥천같은 경우라면 좀 확충해서 지어 주어 가지고서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주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U·R대비"해서 농산물이나 모든 상품이 자유시장 물결을 타고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농산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쌀수입까지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추세하에서 상당히 농촌에는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마침 주요업무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을 "U·R대비 교육강화"라고 해서 "우수농산물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우수농산물 개발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마 이것은 중등교육국의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수농산물이라고 함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며, 무엇을 개발해서 U·R 대비 농산물 수입, 막 수입이 되는데 그것을 대비할 것인가, 아마 농업학교에서 이것을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은 이농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농업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보다 더 농촌 소득이 되고, 이것은 우리들 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우수 농산물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잘 지도가 되고, 교육이 된다고 할 것 같으려는 충분히 우수농산물이 무엇인가, 이농을 안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서 그런

것을 개발할 학교가 있지 않겠는가 봐지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해야지만이 우수 농산물을 개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인사이드 하는 것을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옥천군의 실례를 보며는, 특히 초등교육에서 볼 것 같으려는 신규발령자가 하나도 없어요, 신규발령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선생님들의 고령화, 어떻게 보며는 노령화 현상으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어떤 점으로 봐서는 그러한 젊은 새로 막 교육을, 새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아 가지고서 그러한 새로운 활력소를 불러 넣어 주어야 되겠는데, 교사 수급관계에 있어서 학교가 줄고, 폐교가 되고, 분교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 소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새로 나오는 전입 선생님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 같습니다.

옥천군에서 요번에 선생님이 남아 돌아가서 6명인가를 다른 시·군으로 전출되는 사례를 봤습니다.

이런 것이 보다 더 새로운 교육, 새교육을 받은 젊은 교사가 들어와야 되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6명이 타시·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실례를 제가 알아 보니까, 장기근속한 사람들 순서로 해서 타시·군으로 갔는데, 장기근속한 사람 순서로 띄워서 무조건 간 것이 어떻게 보며는 타당하다고 봐지는가, 기준을 어떻게 이렇게 정했는가, 그것은 제가 다음에 답변을 듣고서 보충질문을 또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에 다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겨울철이 되며는 학교 교실의 난로문제입니다.

어떤 학교는 연탄을 때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나무를 준비해서 때는 학교가 있고, 또 도시에 좋은 학교들은 그 보일러라든가 이런 난방을 잘 이용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숙직실 같은 것도 어떤 학교는 연탄을 쓰고, 또는 나무를 때는 그런 학교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화장실문제도 그 재래식 이것이 또 시골로 가며는 뭐 그대로 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교육환경의 개선이 돼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특히 겨울이 돼서 난로를 피우는 것이 연탄

을 피운다는 것이 어떤 점으로 봐서는 꽤 어려워요, 학교에 일을 보는 분이 아침에 일찍이 연탄을 지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점으로 봐서는 꽤 어렵단 말이지요, 한번 꺼지려는 그 불을 지피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학생들에게 추울때 제때 제때 난로를 피우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봤습니다.

이것들을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과 어떻게 해야지만 참 좋을 것인가, 그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숙직실 난방은 연탄, 나무, 이런 것 보다는 제가 경험한 것으로 봐서는 심야전기가 있어요, 심야전기를 학교에 전체적으로 다 아주 의무적으로 실시케 해서 이것을 이용을 하려는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을 우연히 갔다 올 기회가 있어서 갔다왔는데 거기의 국민학교에 그 화장실은 거의가 대·중·소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조그만한 1·2학년 학생들은 자기들에게 맞는 그러한 조그만한 화장실, 또는 4·5학년, 3·4학년들은 그 자기네들 맞는 그러한 화장실, 큰 아이들은 큰 아이들 쓸 수 있는 화장실,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 진것을 봤을 적에 '아! 참 잘 사는 나라요,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것이지만은 재래식 화장실만은 어떻게 빨리 고쳐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맥을 같이 하는 그 인사관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사 기준이 타시·군과의 관계는 몇 년이 되면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4년이상 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그 일반교사는 말고, 교장들이 초·중·고 4년이상 근무하고, 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 실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전교조에 관한 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지금도 상존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있으며는 어떻게 활동을 하는 것인지, 또는 전교조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분들이 전교조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전교조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다 이것이 나쁘다고만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분들이 주장하는 데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을 어떤 점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보시지 말고, 이것

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 들일건 받아 들이고 해서 취사선택을 해 주어야만 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와 같이 그냥 재목을 달아서 열 두 서너가지를 질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으로 봐서는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마는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 김영세 : 다음 의석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릴 것은 질문시간은 발언시간이 20분 제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켜 주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 이상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승진을 위한 가산점 때문에 벽지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벽지학교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벽지학교가 몇 개가 있으며, 이것은 어떻게 등급을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벽지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발령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하는 건지, 그리고 동점자 처리에 대한 처리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고, 지금 그 여교사 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 여선생님들이 벽지 근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남·여교사간에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면에서 그게 제일 불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때문에 벽지에 갈 수도 없고, 그 분들 얘기로는 노처녀나 과부아니며는 그런데 갈 수가 없는데, 앞으로 여교사 숫자는 자꾸 늘어 가는데 동일한 면에서 어떻게 승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벽지가 아닌 다른 길로 해서 여교사에게도 가산점을 딸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할 길은 없는지 하는 것을 좀 여쭙어 보고 싶고,

두번째는 사서교사 강습차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사서교사 강습차출시 기준하고 그 내규가 수시로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된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고, 최근 실시된 사서교사 강습이수자 수는 대충 몇 명이 되는지, 교육청별로 좀 나눠서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질문이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 숙직실 난방시설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숙직실에 사용하는 연료를 어느 학교를 가보니까 아직도 연탄을 쓰는데가 있고, 또 조금 시내학교는 석유보일러를 놓은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연탄을 쓰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지난 겨울에 숙직실 연탄가스 사고 같은 것은 없었는지, 있었다며는 어떤 사고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도내 학교를 전체 석유보일러로 대체를 할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런지, 이것은 조금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숙직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숙직비가 타도는 전부 5천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충청북도만 3천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도 선생님들의 사기를 위해서 5천원으로 인상해 줄 수는 없는지, 심지어는 그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시간외수당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돈이 대개 시간외근무를 잘 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 걸 돌려서라도 타도와 같이 5천원 정도는 숙직비가 돼야 저녁이라도 한 그릇 따뜻하게 잡수실 수 있지 않는가 이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네번째로 아까 얘기가 나왔던 교실 난방문제에 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교총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니까 교사들의 불만사항중 가장 크게 난방문제로 29%를 차지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 제가 지난 겨울에 몇 개 학교를 가보았더니 장작을 땀다고 그래서 보니까 장작 운반하는데 운반비들지요, 장작을 패는데 필요한 돈들고, 또 겨울에 그것을 때니까 애써 도색을 해놓은 흰벽이 또 천정이 시커멓게 그을어 가지고 교실이 아주 컴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도색을 할려면 돈도 들고, 또 비용도 영달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차제에 연탄에 대한 문제, 장작에 대한 문제, 이걸 좀 혁신적으로 바꾸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여쭙어 보겠는데 국민학교에 신설학교하고, 오래된 학교중에서도 운동장에 그 배수시설이 안돼가지고 겨울에 당채 질어서 쓸수도 없고 거기에 밟고 다니는 흙때문에 청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형편인 학교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새로 지으실 때에는 학교 시설비중에서 운동장의 배수토를 좀 완전히 해서 운동장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걸으려면 평평하게 운동장이 잘 났는데 비가오든지, 겨울에 눈이 쌓였다 녹으면 전

연 사용을 하지 못하는 학교를 제가 몇 군데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장의 배수로를 좀 치고, 모래라도 깔수 있는 계획은 언제쯤 실천이 될 수 있는지 그 것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다음은 이재희위원 순서입니다.

이재희위원 질문하시면서 잠깐 휴식시간을 두어서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 초등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희비가 엇갈리는데 우리 부의장님은 이 옥천지역에 초임발령자를 보내 달라고 말씀을 드리셨는데 제천, 단양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들이 대부분 외지 분들이십니다.

오셔서 2년만 넘으면 그냥 박달재 넘어갈려고 애 많이 쓰시는데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정기 이동때 교장, 교감이 동시에 발령이 나가지고, 학교가 아주 침체 상태에 있는 이런 경우가 약간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무주임, 또 몇 분 선생까지 발령이 나며는 어떤 학교에서는 송별회를 하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남아 있는 사람

위로 잔치를 해 주고 가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 결성이라든지, 어머니회 결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좀 참작을 해서 교장과 교감이 일시에 발령나는 일은 없도록 해줄 수 없느냐 이것 좀 간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요즘에는 증치교사라 하지 않고 교과담임제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던데 학기초에는 일선학교에 교과담임제가 몇 명씩 배정된다고 통지가 와서 학교 교장들이 담임과 사무분장을 발표를 한 뒤에 나머지 미 발령자를 독촉을 하니까 이제 인원이 없어서 못 준다, 그래서 학기초부터 학교장이 가장 권위를 세워야 될 그 학급배정문제에 수정을 가하고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줄 수 없으면 애당초 학기초에 정확한 배정인원을 알려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 여러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중등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시에는 중학교를 추첨제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중학교도 국민학교처럼 광역학구제를 좀 적용할 수는 없느냐, 예를 든다면 문전에 학교를 두고 이걸 잘못 돌려서 4기로, 5기로 시내버스를 타고가는 이런 폐단이 있는데 이 일선 한 교육청에도 물어보며는 교육청에서는 위장전입을 막을

수가 없고 T.O 조정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조금 더 성의를 표해 가지고 추첨을 한 뒤에 상당기간 학생들끼리 바꾸는 것이라도 좀 허용을 해서 약간의 편의라도 좀 봐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는가 한번 여주어 봅니다.

두번째 우리 충청북도에는 금년도부터 고교입시 시험을 수능능력평가제로 해가지고 일선학교에서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 질 것인가.

그래서 이 원래 질문은 다른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금년에는 과학 부분에 교직원 수라든지, 수업시수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되는 생활에 적응토록 학교에서 이 과학교육에 충실을 기하고자 그러는데 이 과학교육을 좀 강화시키자면 입시문제에 실험실습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일선에 있는 실험실습 기구가 상당히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또 우리 교육위원들이 지난번 예산에 1억 원 삭감해서 국민학교 학생들의 학급당 2만원씩 실험실습 재료비로 앞으로 배정을 해준다는 그런 결의도 갖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선학교 실험실습 기구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고교입시 문제에 실험실습 문제를 좀 출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 관리국장님 한테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건축에 관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 나름대로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의한인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 좀 우문이 되더라도,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좀 어떻게 학교공사를 견고하게 짓자, 또는 교육부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렇게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통 학교공사 입찰을 하려는 부분적인 그런 하청은 인정이 되어도 전면 하도급은 못 주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91년도에 입찰회사와 시공회사가 다른 그런 공사는 없었는지, 또 앞으로 이러한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강당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 비등하기 때문에 그 설계는 몇 개 표본설계 해 놓으면 거의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는 설계용역을 주는게 있습니다.

물론 지형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표본설계를 적용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이 기술적인 문제로 전국에 여러개 설계도를 좀 모아 놓으려는 시설용역을 주지 않고도 응용할 수는 없는 지, 그래서 '91년도 사업중 설계용역을 준 것은 몇 건

이나 되고, 그 설계용역으로 준 비용이 얼마나 되고, 어떤 회사가 주로 취급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금년도 일부학교에 강당도 짓고, 체육관도 짓는데 강당과 체육관을 짓는 그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천여고와 보은농고가 지금 강당과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크기 학교 규모로는 오히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천여고가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제천여고는 강당을 짓고, 보은농고는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두 군데 다 잘 짓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천 대표이고, 제가 보은농고 출신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다 잘 짓기를 원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일세기에 한번 질까 말까하는 이 학교 강당을 조금 더 보태서 체육관으로 지어가지고 후회없는 일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천여고에 지금 강당 신축을 설계 변경해서 체육관으로 좀 고쳐 줄 수 없는지, 또 애당초 제천 국회의원이 4억원을 내부부에서 전입해 올때 제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램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보태면 체육관으로 질 수 있을텐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설계 변경을 해주실 수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시간이 오래됐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16시 24분)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신회위원부터 질문하세요.

○ 홍신회 위원 : 홍신회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서에 대한 다섯가지 사항은 금년 들어서 근래에 신문이나, 또는 방송에 보도가 되었던 교육의 문제에 관한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일반 교육관계자들에게 신뢰를 부여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면으로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것이 몇 건 제가 아는 범위에 있어서, 언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신속보도에 따른 오보의 위험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허위보도라든지 또는 과장보도라든지 이런것이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언론의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기관에 좀 관계도 하고 또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그런 피해자를 구제하는 언론중재위원회도 맡고서, 일을 양면에서 해봅시다라는 과연 이런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가 얼마만큼 정확한 것이 보도됐는지 또, 거기에 어떤 과장보도나 또는 부실보도가 없었는지, 뭐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몇 가지를 집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이 충청일보에도 그것이 보도가 한 두어 차례 되었습니다마는 3월초에 "산남, 을량, 가경동 신설학교가 산남, 가경국교는 준공검사도 안받고 개교를 했고, 을량국교는 준공검사는 받았지마는 그 준비가 소홀해가지고 중간에 안전사고의 위험을 겪으면서 개교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것이 나왔는지 좀 미리미리 공사를 진척시켜서 이런 것이 없었으려는 좋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충청일보 뿐만 아니라 기독교방송에서도 신랄하게 보도가 났습니다.

두번째 애깁니다.

두번째는 이 "육천교육청의 내신서 변조파문"이라 이래서 나온 애깁니다.

이것은 3월 3일자 동양일보에도 나왔고 또 이어서 그 이튿날 4일자에도 나왔는데 엄청난 단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육천교육청 교사내신서 변조의

혹"이라 이렇게 해서 "안내중학교와 도교육청 자료 서로달라", "생활근거 희망근무지 본인 의사와 상이", "육천교육청 내신서 열람 완강부인", 뭐 이런 식의 것이 나오면서 4일자 애기에서는 "내신서 변조파문, 관계자 진술 잇달아 번복", 이러면서 육천교육청에서는 인사담당자 오기를 해명했고, 당해 학교 교장은 근무지 임의결정을 시인했고, 본인인 강경식교사는 교육부에 제심청구를 했다, 이런 것이 엄청나게 크게 보도가 났습니다.

이것을 보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으로 볼적에는 이것이 신문에서 이만큼 크게 다뤄야될 성질의 것인지, 그게 진실인지, 상당히 교육행정, 특히 인사행정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번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번째입니다.

3월 20일자 중부매일에 나왔고, 그 전날 3월 19일 기독교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청주남중 학부모 반발" 이러고서 학생의사를 무시하고 럭비운동선수 차출에 무리를 했다, 이것은 전국소년체전이 부활됨에 따라서 각 학교지정 육성종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무리가 빚어져서, 이런 것은 좀 바람직스러운 것이 못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보도가 났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지정

종목을 지정을 하셨는지, 그러면 그 지정 종목의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뭐 이런 것에 과연 우리가 따랐는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중부매일에 야학에 대한 것이 3월 19일자에 좀 나왔습니다.

이 근로청소년들이 9개의 자활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150명이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라고 하는 관계당국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고, 독지가라든지 행정당국의 일부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좀 그 불우한 사람을 도와 줄 수 없겠냐 뭐 이런 쪽으로 아주 한면이 전체적으로 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분들의 입장으로 보려는 야학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 대학생들이 대부분 교사노릇을 하는데 이런 지원방안은 혹시 없는지, 이런 것이 네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최근에 얘기입니다.

선거를 관련해서는 뭐 보도가 여러가지로 나옵니다마는 "총선임박 도교육청 잇단 행사 눈총" 동양일보의 박스 칼럼에 그 것이 일면에 나왔습니다.

"급조된 잇단 행사"해 놓고서, 내용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3월 18일날 체육고기공식이라든지, 3월 20일 학생회관 개관식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에

서 3월 17일 고인쇄박물관을 개관했던 것도 선거홍보용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꼭 지켜야 될 우리, 이 교육의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꼭 선거에 앞서서 이런 것이 시기에 알맞는 행사였는지, 우리가 꼭 그때 할 수도 있다고도 보겠지만 한편 생각하면 과거에 부터 이루어지는 하나의 정치 행태가 지속돼 내려온 것이 이게 연이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살 정도의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하는 그 신문 보도를 보고서 그런 기사가 나온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떤 기관이나, 조직을 움직이자면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뭐 잘한 일, 북돋워야 할 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관계관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한 업적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육을 조금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언론이 다소의 과장을 했든지, 허위보도를 했다고 하게 되면서, 이제는 각 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언론의 자세를 가다듬을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의 모군수는 모신문에 난 기사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해가지고 언

론중제 신청을 해놓고, 취하를 그렇게 뛰어서 언론의 힘에 의해서 종용을 했어도 끝내 굴복을 안하고 그 언론중제 신청을 해서 정보도를 한 사실이 요 최근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 언론도 살 길이 생기는 것이고, 또 각 기관의 입장으로 볼 적에 위상도 정립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언론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도 없이 우리가 거기에 자꾸 말려들어가는 그러한 과거의 행태는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좀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개의 그 보도내용, 이것이 그런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하게 되며는 이런 의미에서 그런 의연한 어떤 대언론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몇 가지를 추려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다음은 김응복위원 질문하세요.

○ 김응복 위원 : 김응복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이 전국에서 앞서간다고 이렇게 자처하고, 또 우리 교육청 실무진에서 그 만큼 연구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임한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방법은 어느 의미에서는 고입이나 대입 입시제도 개선에서부터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시제도를 개선한다며는 그 이하의

교육기관에서의 학습지도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입시제도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94년도부터 대학입시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고입 과정에서, 조금 앞서 간다고 할까, 이런 뜻에서 수학능력 평가제도를 충북에서 타도에 앞서 실시한다고 이렇게 보도도 봤고 또, 그러한 교육감님의 소신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수반하는 문제를 몇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실시한다며는 교육적인 효과, 노리는 효과는 무엇이겠느냐, 이점을 밝혀주시고요.

둘째, 대개 일선학교에서 고입제도나 대입제도가 변경된다며는 굉장히 고등학교 이하 선생님들에게 그 영향이라는게 예민하게 반영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며는 또, 각 중학교나 이하 학교에서 각 교과목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입시제도에 편중될 염려는 없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히 여론이라든가 또 혹은 일선학교 교사들의 여론도 수렴했으리라 믿습니다. 마는 일부 신문에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여기에 대한 불안이라고 할까 또 염려라 할까 하는 의미에서 반대 여론도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제도를 확정하기 까지 어떤 경로와 일선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어떤 시책 같은 것을 가령 결정하시기에 앞서 그러한 여론을 수렴하는 의미에서 우리 교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교총은 교원단체의 대표적인 기관인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에 교원들의 정치적인 의견수렴이라고 할까, 또 대부분의 교육을 대표하고 일선교육에 직접 종사하는 교총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은가, 또 그런 것이 비교적 일선교사들의 의견수렴에 방향이 정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 교총과 의견을 교환한다든가, 교총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쳤을 줄로 믿습니다만, 만일에 앞으로 정책수립에 그러한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관한 그 간에 교원들의 의견수렴하는 것은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일부 신문보도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이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질이 좋은 교육정책을 실시하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동조를 얻는다는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입제도개선을 충청북도에서 앞서

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주무국장인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다음에는 감사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수 위원 : 감사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 서너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수목적 고등학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있기는 체육하고, 저희 도에는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아마 이 세개 학교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애초에 설립할 때부터도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 하고 틀려서 뚜렷한 그 설립 목적이 있어서 설립이 된건데, 아마 여기에 제가 듣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많지 않느냐, 입학지원자의 감소라든지, 지원자가 없어서 다른 과로 전과를 한다든지 하는 실례가 아마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우리 다 같이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위원이나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편견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특수고등학교에 재적학생 현황하고, 또 금년도 1학년 지원 현황과 미달교과

있었을 때는 그 이유하고, 그 미달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선발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나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특수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하고 불려서 뭔가 특혜가 있어야 이런데 지원이라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아마 지원도 하리라고 믿는데 특혜라면서 학비감면이라든지, 또는 그 기숙사비 같은 것 전면 면제, 이런 것이 아마 있어야 될 줄로 아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체육고등학교만이 아마 전체 수업료 면제도 되고, 또 기숙사에 들어가는 식비죠, 이것도 아마 전액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고등학교는 이러한 특혜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고등학교는 어디에 그 법적근거로 인해서 이러한 면제를 하고 있는지는 그걸 좀 아르켜 주시고, 제 생각에는 과학의 영재교육을 위해서 이 과학고등학교도 참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학교로 보는데, 이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일반고등학교 같이 아무 감면조치라든지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역시 거기도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에 들어가는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학고등학교에 학비감면을 할 수 없는 건지, 어떠한 이유로써 지금 과학고등학교나, 이런데는 학비감면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식비라도 좀 반감을 해줘서 뭔가 아

이들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줘야 되지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충주에서 사는 학부형 한분이, 아주 성적이 우수한데 과학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학비가 많이 들어서 못 보낸답니다.

집에서 충주고등학교에 다니면 밥값도 안 들어 가고, 또 충주고등학교에서 납부금 면제도 받을 수 있고, 이런데 과학고등학교는 집을 떠나가지고 청주가서 있게 되어 있는 까닭에 학비가 많이 들어서 못 보낸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적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과학고등학교도 뭔가 그 학비감면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그러한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규정상, 수업료 징수규정이라든지, 규정에 제약을 받아서, 규제를 받아가지고 해 줄 수 없다면 장학금이라도 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많이 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중앙고등학교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설치할 했는데, 그럼 현재있는 중앙고등학교는 어떠한 학교 형태로 개편이 될 것인지, 또 기타 다른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으시려는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하나는 보충수업 및 학원 수강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규제 이후에 현재까지 도내에 보충수업의 실태는 어떻고, 또 학원에 수강을 하는 그런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실태는 어떤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그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보도기관, 월간지 보도기관에 기사되시는 분이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교육위원님 이시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며는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 뭐냐 그랬더니 지금 청주시내 학원에 수강생이 많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많이 출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기로는 방학때 이외에는 학원 출입을 규제하는 걸로 지금 방침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게 단속도 안되고 있고, 말하자면은 그 행정지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신력을 잃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작년 교육청의 방침을 볼 것 같으며는 작년 7월달에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 규제에 대한 방침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아무런 교육청의 태도 표명이 없다

는 겁니다.

이래서 학부형 간에도 불평도 많고 이러니 풀어 주려면 확 풀어주어서 다 다니게 하던지, 그렇지 않고 규제를 할려면 엄격히 단속을 해서 어느 학생은 가고, 어느 학생은 안가고, 이러한 그 불균형적인 일이 없도록 하고, 학부형들의 불만이 또 그 걸로 인해서 많이 있습니다.

보내고 싶은데 교육청의 방침이 어떤지 모르겠고, 그렇게 관청에서는 출입을 하지 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낼 수도 없고, 이렇다는 얘기를 직접 저한테 해서 아마 그럴리가 없을 거다, 한번 교육위원회가 소집되든지 하려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 교육적인 방침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시의 공신력을 잃게 되고 하니까, 교육청이 앞으로의 규제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교 입학시험제도 변경에 대해서 아까 교육감님이 잠깐 그냥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고교 입시방법을 변경해야 될 배경에 대한 설명과, 또 그 필

요청을 좀 내일 관계국장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을 뭔가 좀 연구하는 기간이라든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줄 아는데 조금하게 이걸 '93년부터 실시를 한다, 하는 것을 지상에 보도를 하고 이래서 아마 사회적으로도 지금 중학교 3학년 학부형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교육위원들한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을 물어와도, 지금 현재 저로서는 어떻게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걸 상세히 그 배경이라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내일 관계국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박병해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병해 위원 : 박병해입니다.

업무계획에 그 페이지수까지도 전부 명시를 해서 여기 해드렸는데 조사도 잘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9페이지에 보며는 "체계적 지

도"라고 뭐 이렇게 써있는데, 그 체계라고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려는 해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며는 "교원연수, 컴퓨터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컴퓨터 관계를 보며는 교교 310명, 이 310명은 이수시간이 몇 시간이고, 초·중교사는 금년에는 컴퓨터연수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인지, 또 연수를 그 분들도 한다고 그러며는 몇 명이나 되고, 그 시간은 얼마나 되는 건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제변에는 각 학교에 비치돼있는 학생용 컴퓨터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사장되고 있으면서 그 사장된 이유는 전담지도교사가 없다고 한다는 것이 큰 이유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려는 컴퓨터운영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정말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서 교원 컴퓨터연수비라고 하는 막대한 비용을 줄여서 실기교사를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 현행법상으로 어떤 것인가, 그래 그 법상에 자세한 것은 제가 다 할 수가 없지만 대체로 지금 조사를 해 보며는 교육법 제79조에 보며는 교육공무원법 제3장 자격, 또는 교원자격검정시행규칙 제3조 3항, 뭐 이런 것을 주욱 떠들쳐서 보면 현재 공업고등학교 이런데서 실기교사를 채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잘 답변을 해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장에 보려는 업무계획에 38페이지, 35페이지 이런데를 보려는 초등에서 772명, 중등에서 804명, 과학기술과에서 1,070명, 과학교육원에서 120명, 이래서 교원연수가 2,766명이나 되고, 또 일반직 연수가 270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금년에 교원연수가 된다고 했을 때에 그 업무계획을 봐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 해서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교육을 받는 교육과정 안에 국가관 확립과 도덕성에 대한 교육량은 전체 교육에 몇 프로나 되는 것인지, 또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학교에 돌아가며는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 교육을 하는지, 또 해마다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받고 나가서 전달 교육을 하던 안하던 간에 그 교육결과는 교육청에서 확인을 하는지, 이런 문제 같은 것은 학생이 교육을 받은 만큼 효과가 난다고 그러려는 학교나 교사 불신, 학생들의 어떤 사고 방지, 뭐 이런 것은 거의 근심을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수련활동도 보려는 인원이 16만520명에 달하고 있어요, 금년도 계획이 중등장학과에서 학생 수련계획을 보며

는 4,520명, 또 행진이나, 참배, 견학 이런 걸 보려는 5,000명, 또 사회교육체육과에서 보려는 15만천명이 야영, 자연학습원 이런데서 교육들을 받는데, 아까 교사들에 대한 질문과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가운데에 그 윤리 도덕성에 관한 교육은 교육과정 전체 시수에 몇 프로나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시는지, 과연 이 학생들이 돌아가서 어떤 방법으로 동료들에게 여하히 전달하고 또 그 결과를 교육청에서도 확인을 하는지, 이걸 국장님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고, 관계과장들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계획의 38페이지 13항에 "생활지도관계" 이런 걸 보려는 생활지도자료집 제1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지도자료집이라고 하는 것을 죽 읽어 보니까, 그 항목별로 교사나 학생들의 경험과 성공사례 등, 이런 좋은 자료를 많이 수록해서 편집이 되어있어요, 더군다나 동서양의 명언, 또는 생활예절, 또는 아주 유익한 자료 같은 걸 많이 삽입을 해서 제가 그걸 한번 볼 때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자료가 일선학교에 어떻게 이것이 지도활용 되는지, 만일 이 지도활용이 책만 보내고 받아만 둔다고 하는 이런 자료라고 하려는 그 여러 참 좋은 자료를

모으고, 이를 발행하느라고 헛수고만 하고, 교육효과는 없는 것이 아닌가, 아주 좋은 자료인데 이거 정말 참 꼭 이것이 학교에 침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묻습니다.

그래 또 이것도 잘 학교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로만 끝친다고 그러며는 뭐 질문 안하고,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92학년도 학생 생활지도 계획을 떠들쳐 보니까, 아주 치밀하게 세밀히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 제가 질문하는 대부분이 다 그런건데 국민정신, 또는 도덕성 분야, 혹은 학생들이 근면·봉사관계, 뭐 이런 것이 그 안에 삽입이 되었는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국민 도덕성에 관한 것, 국민정신 도덕관계, 이 근면·봉사 문제가 정말로 요즘에 이것이 걸여된 교육이 돼있는 걸로, 이렇게 보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몰라도 아주 안타깝기 한이 없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학교에서 지도를 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을 질문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계획의 44페이지 12항, 또는 20항, 26항 뭐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보며는 1교1기라고 하는 각 학교에 꼭 한가지씩 어떤 운동경기를 보급하는, 그런걸 하라 하는 이런 육성종목 이런

것도 연관이 되지 싶었는데, 이런 1교1기 관계는 도에서 각 학교마다 아주 육성종목으로 지정한 것인지, 또 각 학교에서 임의로 정한 것인지, 만일 학교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며는 도에서는 다 몰라도 교육청에서는 어느 학교가 1교1기는 뭐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잘 알고서 혹은 후원이나 지도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곁들여서 1인 1운동, 이것도 아주 강조는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설명할 만큼 자세히 서로가 알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이 소년체전 부활에 관한 것이 아까 질문이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건 대부분다 그만두고 그 중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초·중·고에 종목별로 이게 지역별 어떤 종목 이런 문제가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하며는 삼원국민학교가 배구를 한다고 그러며는 충주시내에 어느 학교가 배구를 한단는지, 저 옥천중학교가 배구를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옥천시내에 어느 국민학교가 배구를 하고, 또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가 배구를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야말로 육성하는 문제가 잘 되어 있는 것인지, 이걸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호교사 정원확보가 금년에

24명이 배정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업무계획에 나왔는데, 각급 학교에 이번에 24명을 배정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내에 양호교사는 학교별로 몇 %나 되는 건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양호교사는 현행법상으로 봐서 보건위생에 관한 수업지도가 가능한 것인가, 이것도 이제 교육법이나 현재 수업하는 여러가지 자격문제 뭐 이것도 한번 찾아 봤어요.

보건법시행령 6조 3항 제1호 이런데를 보니까, 그런 교사로서 어떤 그 전체를 가르치지는 못하지마는 양호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보건지도 뭐 이런 부분은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 지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는 법상으로 가능한 건가, 왜 이걸 질문하는가 하면서 양호교사는 어느 학교든지 가보면 그 학교에 손님이 오면 손님 접대하는, 차나 운반하고 다니는 이런 것 때문에 봉사한다는 뜻에서 기꺼이 그 분들이 하기야 할테지마는 대부분 그만 소외당하고, 외욕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런 것이라도 조금씩 맡았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학교에 일직교사가 현재 대부분이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그래 일직을 하는 여교사도 혼자, 또 숙직을 하는 교사도 혼자, 그래 이게 전담숙

직제가 되어 있는 학교는 숙직은 제외가 되겠습니까마는 남자나, 여자나 전부가 다 무서워서 다닐 수도 없다, 정말로 이거 생명 내걸고 앉아 있어야지 무서워서 돌아 다닐 수도 없다, 사실은.

아주 담이 센 양반은 요즘 그 수화기를 가지고서 돌아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게 꼭 한 사람씩 해야 되는지, 이것도 그 현행법상으로 보려는 원래 원칙적으로 들이 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30인이하 일때는 하나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할 수 있다, 뭐 이거보다도 우선 공포에 떨어져 숙직을 하는 건지, 일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된다고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연구원에서 공동과제로 학습자료개발을 8개 항목의 영역에 걸쳐서 하는데 이 8개 항목 영역으로 아주 참 좋은 것만 있지, 효도, 성실, 경애, 신의, 정의, 정직, 분수 뭐 이런걸 가지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충청복도하면 이 중에서 한가지만 연구를 해서 각 도가 합쳐져 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 내는 건지, 또 이 책자가 만들

어겨서 이런 자료가 만들어져서 나온다고 그러며는 연구원에서는 교육청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서 일선학교에 어떤 방법으로 교육에 활용이 되는 건지, 문제는 그 중요한 좋은 자료가 학생한테 어떻게 침투가 돼서 교육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아까 계속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인데 말로는 이 교육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문제를 금방 다 답변하기도 어려운 답변이지마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을 듣고, 보고하는 이런 문제를 볼때는 참말로 이거 도덕성 관계나, 국민정신 관계나, 이런 문제가 결여돼서 이대로 나간다고 하며는 어떻게 우리 한국이 될것이나, 하는 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구체적인 이런 설명이 계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질문시간에 제한은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정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예, 권혁풍입니다.

첫째는 '92학년도 교감 승진 현황과 그 선발기준 및 문제점, 그리고 '92년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기준 및 현황과 과목별 인원배정의 합리성 여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다마는 교감 승진할 때 그 선발기준에 과목을 불가피하게 아마 그 기준으로 삼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든가, 미술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 점수에 지금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110점 정도, 기타 사회나, 국어나, 과학같은 것은 약 120점 정도 이렇게 차이가 크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럴때 즉, 가정이나 미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젊은 분이 교감 차출될 가능성이 있고, 사회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좀 30년 근무한 분도 여기에 120점을 받기가 힘든 그러한 그 불공평한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과목과 경력을 좀 절충해서 지금 그 경력을 더 중시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인데, 이것을 좀 더 경력자, 오래하신 분이 거기에 좀 우선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것이 합리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하나 여쭙어 보겠습니다.

두번째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상 여러가지 가산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근평개정이 되어 가지고서 그 가산점을 연단위에서 월단위로 바뀌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혹시 있는

가,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번째는 먼저도 많이 말씀이 되었던 건데 교원의 누락 경력을 여러가지 면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즉 과거 농업에 종사한 그 증명서가 5년이 넘어가며는 해 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인정이 됐는가 어떻게 조정이 됐는가, 먼저도 말씀이 많이 되던 얘긴데 다시 한 번 그 현황을 여쭙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및 인사원칙의 제정 근거는, 하는 그런 근거를 제가 묻는데 이것을 묻는 이유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라든가 인사원칙이 제정 근거가 아마 교육감의 교육규칙이 아닌가, 그렇다며는 어디까지는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가, 즉 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라든가 인사원칙도 조례에서 정할 수 없는 것인가, 조례와 규칙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조례이고 어디까지가 규칙인가, 하는 것이 제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는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이라고 돼 있는데, 즉 충북에서는 연간 약 8억6천만원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30%정도만 집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마 그냥 다시 이월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처음부터 그 설치한 목적이, 취지가 교사 복지 차원이 아닌가 할 때에 그 확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것이 그런 것 아닌가, 좀 더 교사 복지 차원에서 좀 확인 절차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또 여쭙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는 이것은 제가 좀 사적으로 답변을 들은 얘깁니다마는 다시 한번 나온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즉 학교안전공제회 예산집행 기준의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한 3억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그런데 천6백만원만 이게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아마 집행이 안 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거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하향 조정을 해서 그 실용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곱번째는 교육과정 내용 결정권이 '95년도에 가서는 40%가 도교육청에 이양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95년이 머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향토학교로서의 어떤 그 교육 과정 같은 것, 향토학교 혹은 지역사회 학교로서 교육과정이 지금 착착 준비가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비가 돼야 할텐데 하는 것을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ETS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주 국민학교, 중학교까지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즉, 세계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하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그 ETS 시험을 본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국민학교와 중학교 그 대상 지정교가 어떤 학교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시험관리방법, 즉 어떻게 감독을 했으며, 어떻게 처리했는가, 정확히 된 것인 가를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그 결과분석이 결과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굉장히 우수한데 고등학교로 올라 갈 수록, 뭐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열등한 그런 서열로 매겨졌다.

그 이유가 뭐가 있을 텐데 어찌 국민학교 중학교까지는 세계적인 그런 권위있는 기관에서 본 그 시험결과가 상당히 우수하게 나왔는데 고등학교, 대학을 올라 갈 수록 나빠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텐데, 그 원인이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 하는 것을

물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 성적을 분석을 해가지고 공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도적으로 하셔가지고 학교별로 그 경쟁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어떤 취지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담당교사들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게 될 때 과연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말로만 전인교육, 전인교육하지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입학 성적을 올리는 그런데 치중할 수 밖에 없다.

고등학교 입학은 사실상 지금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압니다.

정원상으로 볼 때는 어디가나 청주시내도 그렇고, 시골에 가면 오히려 미달교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까지 해서 과연 전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하는데 대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초·중등 교사 승진할 때, 그 가산점을 산정할 때 국립학교 근무교사에게 우선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 국민학교 할 것 같으면 청주교대부국이라든가, 중·고등학교 할 것 같으면 충북사대부속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그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상당히 우선점을 줍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그 공립학교, 혹은 사립학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한 위화감과 불평감을 느낍니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 문제점이 뭔가, 그 대책은 뭔가, 이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질문요지에 넣지 못한 건데 그냥 한번 질문을 던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먼저번 학생회관 개관식에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서 제가 의문나는게 많았습니다.

그래 인제 토요일날도 가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묻는 것 보다 여기서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

즉, 충북학생회관을 설계물 하셨는데 총면적이 4천742평방미터 였습니다.

그 중에 천844평방미터가 관리실 이었습니다.

프로수로 따지니까 39%가 넘어서 한 40%가까운 이러한 프로테이지가 관리실로 배정이 되었다, 그래서 대강당이 몇 평방미터인가 보니까 천470평방미터 였습니다.

거기에다 특별실이 5개를 합쳐봐야 380평방미터 해서 이것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이

렇게 돼야 되겠느냐, 학생들이 시간을 전용하고, 보다 그 전인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의 활동의 장을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러한 취지에 어긋나는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그 관장을 지방서기관으로 보냈는데 그런 것도 다 관련이 연상되면서, 뭔가 좀 주객이 전도된게 아닌가, 그 관리실이 10개입니다.

보니까, 천844평방미터를 10로 나누어 보니까, 하나가 184평방미터가 되는데 이게 학생들 자료열람실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두배씩됩니다, 관리실 한개가.

물론 관리실이 사무실도 있고 변소도 있고, 뭘 숙직실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관리실을 두기위해서 학생회관이 있는건가, 아니면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관리실이 있는 건가, 이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어떻게 해서 이런 설계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여쭙어 봅니다.

이것으로써 제 질문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장충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충호 위원 : 예, 장충호위원입니다.

저는 도·농간에 격차를 해소해서 될 수 있으면 도시나 농촌의 균형적인 교육의 발전을 염려하기 때문에 두가지 질문을 냈습니다.

이런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교육비 배정
현행 학교교육비 배정 실태를 보며는 학교
당 692만원, 학급당 66만원씩으로, 이러한
획일적인 배분 방법은 지역간, 즉 도시와
농촌지역, 또 큰 학교와 작은 학교, 이렇게
교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
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니 그에 따라
종래 배분방식을 지역실태, 학교규모 등을
고려, 적절히 배분 되도록 개선 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 말씀은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하기 전
에 미리 공부를 좀 못해서, 사실은 이와 좀
다르다는 걸 느껴가지고 제가 오늘 질문을
안하려고 했지만, 그게 다른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 통·폐합에 따른 문
제점, 농촌에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
통·폐합의 원칙은 찬성하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이 원칙이나 기준을 완화할 용의
는 없는가, 또한 현행 학구를 행정구역이
아닌 학교중심으로 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
고 사료되는 바, 이견 도간, 교육청간에 합

의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
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
니다.

이 두가지 모두 저로서는 질문을 안하려
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유인물이 각 위원
앞에 돌아 갔기 때문에 참고로 다른 위원님
들께도 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실사해서 제
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답
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별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오늘
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8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선택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총무과장 이근수,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
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
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엄갑도, 재무과장
고일영, 시설과장 박성근.

- 의사일정(안) : 별첨 1.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 별첨 2.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3.
-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안) : 별첨 4.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2 3월 27일(금요일) 10시00분

의 사 일 정(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부 의 된 안 건

1.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답변(계속)

(10시 개의)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이 유고가 있어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미숙하고 서툰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과장 보고말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집행기관에 대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 시겠습니다.

먼저 어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과 답변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래 2일간은 휴회가 되 겠 습니다.

다만 내일은 직속기관 방문이 계획되어져 있는데 학생회관과 교육연구원을 방문하실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10시 01분)

2.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답변(계속)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의사일정 제

1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며는 어제의 질문에 이어 오늘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청 직제 순에 따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다 끝난 후, 보충 질문을 받기로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 총무과장 이근수 : 총무과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어제 질의하신 내용중 김광수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장 근무지 상주실태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초·중·고 교장 496명중 현재 근무지내 상주하고 있는 교장은 하숙이 8명, 사택거주 224명, 전세 7명, 자택거주 214명 그리고 근무지내 상주 교장은 도내 초·중·고 교장의 91%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도내 근무지 상주를 저희들이 따진것은 같은 군내며는, 청원군내는 청주시 시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것은 상주하는 걸로 이

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따진것이 총체 대상인원 496명중에 하숙을 하고 있는 분이 8분, 사택 거주하는 분이 224명, 전세 7명, 자택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214명, 계 453명 해서 상주율을 91%로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대상인원 총 315명중에 청주 모충국민학교 이재춘 교장선생님이 별세하신 다음에 314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숙을 하고 계신분이 5명 사택에 상주하고 계신분이 166명, 전세 살고 계시는 분이 2명, 자택에서 다니시는분이 124명 해서 297명, 비상주자가 국민학교 17명입니다.

그래서 상주 근무율이 95%, 그리고 중학교가 110명중에 병설교가 있어서 대상은 102명 따졌습니다.

그래서 하숙한 분이 3명, 사택에 34명, 전세 2명 자택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47명, 계 86명, 그래서 상주 근무율은 84%로 봤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총 72명중에 사택에 24명, 전세 3명, 자택 35명, 계 65명으로 해서 86%에 상주 근무율이 나와있습니다.

학교장 근무지 상주 실태를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추가질문은 이따가 추가하시는 건가 아니면 지금 하실건가....

○ 의정직무대행 김광수 : 예, 일괄답변 하신 다음에.....

○ 총무과장 이근수 : 다음은 박병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학교 일·속직은 각 1인씩 근무하면서 일직하는 여교사와 야간에 순시하는 남교사 모두가 공포감에 근무하는 실정인 바, 현행법상 2인으로 할 수는 없는지" 하는 질문을 주신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 당직근무규정(교육부 훈령 제482호, '91.8.20)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당직근무자는 2인 이상을 원칙을 하고 있으나, 교원업무 경감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행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학급수가 30학급 이하일 때에는 당직 인원을 1인으로 할 수 있고, 중학교에서는 남자 직원이 20명 이하일 경우에 1인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지역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 지역 교육청에는 예산형편상 이 규정에 의해서 30학급 미만짜리들은 1명씩밖에 예산확보를 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제가 과거의 예로 봐서는 청주시내 같은 경우 30학급 미만이라도 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근무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돼서 교장선생님이 요청했을 경우는

두사람씩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 요청을 받아가지고 두사람씩 근무토록 하는 것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당직관계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정직무대행 김광수 : 예, 그럼 다음 또.....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먼저 김광수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시·군교육청에 교원인사 담당자를 일반적으로 배치하는데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일반직 배치 이유와 운영 방법, 둘째는 장단점, 세번째에 타 시·도의 실태, 네번째는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에, 일반직을 배치한 이유는 교원인사의 기초자료 정리를 일반직이 분담함으로써 교육전문직이 장학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이었습니다.

운영방법은 자료 정리는 일반직이 하고, 집행문제, 의사 결정은 교육전문직이 하도록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장점은, 교육전문직이 장학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장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써는 다소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이해 부족이 아닌가 해서 이 문제는 계속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타 시·도의 실태는, 일반직이 인사담당을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네번째,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대로 교원인사담당을 일반직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개선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교육대학에 여학생이 90% 이상 되는 데에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점에 있어서 아동들이 성격 형성에 있어서 여성화 경향이 우려됩니다.

두번째는, 다수의 가임 여성들로 조직될 경우 잦은 휴가와 휴직등으로 교육열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육아 자녀교육·군무지 여건등 사정으로 퇴직율이 높아질 경우, 교육안정 저해 요인이 될 것을 우려합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의 첫째는 우수한 남학생이 교직을 선호할 수 있는 전 국민적 차원의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국민교육 차원에서 남·여 분할 모집이 돼야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교육대학이 특차 모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는, 본도 출신 지역별 균형 모집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는 청주교육대학교봉수 학장님과 3월 17일과 3월 25일 두차례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고, 교육대학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에 아울러서 교육부에서도 이 네가지 대안에 대한 대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교장임기제의 장단점과 운영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교장 승진기회의 확대 효과가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첫째 조기승진 회피 경향으로 젊고 유능한 경영자 배출 기대가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임기직 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제 운영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장 승진 평균연령 문제는 57.6세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재임경우 잔여 년수에 관계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9조의3 제1항 "4년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특별한 결격 사유가 무엇이나"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육부령 218호 '91년 9월 20일자 개정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려는 그중에 임기제 실시업무 처리지침 제4항에 보면 "건강", 두번째는 "관리 능력이 부족할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잔여 년수가 4년미만, 다시말하면 6개월이 남더라도 채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릴것은, 현재 우리 도내 교장선생님들 연령 분포가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317명의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이중에 4년이내에 있는 분이 127명 40.1%에 해당이 됩니다.

8년이내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136명 42.9%입니다.

그다음에 8년초과 54명 17.0%에 해당이 됩니다.

54명 교장선생님은 4년 임기가 끝나며는 교사로 채용을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교원의 수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육천관내 신규배정 문제와 아울러

서시·군별 신규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3월 20일 현재 청주 신규 두사람, 충주 7, 제천 8, 청원 1, 보은 3, 옥천,영동은 없습니다.

진천 4, 괴산 3, 음성 5, 단양 5명해서 38명 신규 발령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정원 초과일 경우 타시·군으로 전보하는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은 학급 감축으로 인해서 정원에서 6명이 초과 되었습니다.

이 6명을 인근 영동으로 전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6명을 전보 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본도 인사관리규정 제15조 1항에 의하여 "정원 조정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전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동일군 최 장기근속자 순으로 정원이 초과되는 군에서 부족되는 군으로 전보 할 수 있다.

두번째는, 근무기간이 같은 때에는 다음 순에 의한다.

첫째, 근무성적이 하위인 자, 두번째 교육경력 하위인 자, 세번째는 연령이 적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번째에 타 시·군 전보 연한 말씀이 계셨는데, "몇 년이 돼야 타 시·군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청주시의 경우 전입할 수 있는 연한은 대개 5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청원군은 3년이상이 금년 3월 1일자 전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경합 타 시·도는 2년이상이면 전보가 가능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과 영동은 경합이 세고, 인원이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5년이 돼도 전보할 수가 없어서 희망지에 따라서 연한이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동일교 4년이상 근무 교사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일교 4년이상 근무자 교원수 청주 19, 충주 17, 제천 24, 청원 15, 보은 9, 옥천 26, 영동 21, 진천 14, 괴산 18, 음성 17, 단양 7, 계 18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일선학교에 증치교사 배치 변경 이유입니다.

제천 지역의 예를 들겠습니다.

의림 48학급에서 50학급 사이에 있기 때문에 증치교사 4명을 배치 했습니다.

또 동명과 남천은 46학급에서 47학급 사

이이기 때문에 당초 3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92년 3월 5일 학급을 재조정을 했습니다.

재조정을 했는데 작년 제작년에는 학급이 감소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3학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증치교사가 있는 학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충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결원 보충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교원 정기이동시 교장과 교감 2명 동시 이동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교장·교감이 동시 전보는 가급적 억제함이 교육여건 조성상 타당하나, 동일교 근무연한, 정년·명예퇴직, 승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동시 전보 사례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시 전보는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고, 교감 전보권을 가지고 있는 시·군 교육장에게도 동시 전보가 되지 않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학년도 3월 1일자 동시 전보한 학교는 도 발령에 의한 데가 3개교, 시·군에서 교감 전보를 했기 때문에 동시 전보가 된 데가 11개교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한 것은 왜 그래야 되는가 물론 앞에 여러가지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교

장 발령을 후에 하고, 교감과 교사를 미리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장 전보를 예견은 다소는 합니
다마는 불확실 하기 때문에 이런 누를 범하
는 사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억제되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도내 벽지학교수와 등급 구분, 두
번째는 벽지학교 근무자에 대한 발령기준,
세번째는 동점자 처리 기준, 네번째는 여교
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번째로, 도내 벽지학교수 초등의 경우
94개교가 있습니다.

등급 구분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가,나,다,라 지역으로 4등
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도는 나 지역에 해당되는 학교가 1교,
다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가 8개교, 라 지역
에 85개교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벽지학교 근무자에 대한 발령
기준입니다.

첫째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순위명부 순
에 의거 지역 교육장이 임기를 지정하고 있
습니다.

두번째는, 신규임용 교사는 가급적 벽지
에 배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학기 도중이나 희망자가 없는 부득이한 경
우는 신규 교사도 벽지 배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동점자 처리 기준입니다.

본도 초등학교원인사관리규정 제14조 7항을
준용해서, 첫째는 근무성적이 우수한자, 두
번째는 동일교 장기근속자, 세번째는 동일
교육청 관내 장기근무자, 그 다음에는 경력
이 많은 자, 고령자, 상기 순으로 조정을
해서 전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벽지 못가는 여교사 가산점
부여로 승진기회 확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우대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서교사 강습 차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서교사 강습은 본도에서 '90년도 1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실시하고자 노력은 했습
니다마는, 대학 사서학과가 있는 교수님들
의 저항에 부딪쳐 실시를 하고 있지 못합니
다.

이 것은 본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차출기준을 말씀 드리면, 학교 도
서관을 보유하고 있고, 사서 자격증을 소지
한 교사가 없는 학교로서 학생수가 많은 학
교, 장서 보유량이 많은 학교, 다음에는 현
임교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교사, 두

번째는 사무분장상 도서관리 업무를 부여 받은 교사, 다음에는 본 연수를 희망하는 교사, 다음에는 경합시 교육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 차출 했습니다.

다음에는 최근 실시한 강습 이수자 수, '90년도에 실시한 강습 이수자 시·군별 현황입니다.

청주는 초등, 중등 각 각 7명, 충주는 4명씩, 제천은 3명 초등입니다.

청원 초등 3명, 보은은 초등 2, 중등 4, 옥천은 초등 2, 중등 1, 영동 초등 2, 중등 4, 진천 초등 1, 중등 3, 괴산 초등 2, 중등 3, 음성 초등 2, 중등 3, 단양 초등 2, 중등 1명, 각 30명씩 해서 60명을 '90년도에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병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교원연수 2,766명을 실시했는데, 이중에 "교육과정에서 국가관 확립과 도덕성에 대한 교육량은 몇 %나 되는가"

그 다음에 "연수가 끝난 다음에 학교로 돌아와서 전달교육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전달교육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첫번째, "국가관 확립과 도덕성에 대한 교육량이 몇 %가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교사는 10-20%, 교감, 교장

은 20-30%를 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교육공무원훈련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직공무원은 2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달교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수는 전달이 목적이 아니고, 수강한 자신의 자질 향상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전달보다는 자신의 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고, 그러나 이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직장에 돌아가면 각 직장기관 별로 직장교육이 있습니다.

이때 소양교육이나 직무연수등에서 전달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결과에 대한 확인입니다.

첫째는 장학협의나 사무지도 감사등에서 실시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감사를 통해서, 또는 장학협의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달교육 확인 보다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이 프로테이지를 준수한 교육과정을 편성했는가 안했는가 여기에 역점을 두고 확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전국 시·도 교육연구원 공동 과제 학습자료개발 8개 영역중 1개 영역을 각 시·도 교육연구원에서 담당 개발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와 활용문제에 질문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8개 항목을 시·도가 나누어서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과제는 무엇이나, 15개 시·도·연구원에 공동과제는 학습자료 개발입니다.

그중에 본도 연구원에서 선정한 과제는 기본 생활습관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는 기본 생활습관 지도 자료를 만드는 데, 그 내용 덕목 8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8개 덕목은 본도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기본 생활습관 지도 속에 있기 때문에 모두 포함해서 자료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된 자료의 활용문제입니다.

교사용 지도서는 각급 학교 교사가 지침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읽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읽기 자료는 도덕과 보조 교과서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책명은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다음에는 권혁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 제가 산점이 년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뀔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더 현실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며는 1년 미만을 절상, 절하의 불공평이 시정되어서 사실상 근

무기간 산정으로 공정성 유지가 되어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교원 능력경력 인정현황 초등 분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건수는 258건으로써, 인정 건수는 219건입니다.

84.9%에 해당이 됩니다.

불인정 건수는 39건으로 15.1%에 해당이 됩니다.

불인정은, 왜 불인정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읍·면장이 확인증을 발행 하고, 저희들이 전력 조회를 해서 확인이 되면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 시·읍·면장의 확인증을 받지 못해서 인정을 못받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세에 대한 그 대장 관리가 5년이라고 합니다.

5년이 초과됐을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이 영수증을 가졌다거나,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 본인의 명의로 등재가 되어서 그 사실을 시·읍·면장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시·읍·면장이 확인증을 발행 하면 되는데, 이것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39건이 지금 불인정 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및 인사관리원칙의 제정 근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정 근거

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대통령령 제4393호에 의한 것이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근거는 교육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3877호)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교육부훈령 255호)등 제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해서 인사관리 원칙을 제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와 규칙의 한계에 대한 말씀이 개셨습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규칙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관리 규정을 저희들은 조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 말씀 드린 제규정과 15개의 시·도가 다 아직 조례로 규정을 해서 인사관리 규정을 정하는 데는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과정 내용 결정권중 앞으로 6차교육과정에 대한 준비 사항입니다.

초등의 경우 저희들이 준비할 경우, 저희들이 준비할 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은 1 학년", 두번째는 학교 재량시간, 세번째는 지역단원 설정 문제

입니다.

첫번째 "우리들은 1학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이 3월에 입학할 하면 7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교과학습 이전에 문제로써 다루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6차교육 과정에서도 실시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학교 재량시간 운영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새로 설정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민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주당 1시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 문제입니다.

학교 재량시간에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영역인데, 여기서는 영어, 컴퓨터 한자,노작 등을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선 영어문제입니다.

영어는 3년차 계획으로 모든 학교에 한명 이상씩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 겨울방학에 110명을 1차 연수를 시킨 바 있고, 내년·후년해서 330명 이상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또 여기에 아울러서 미국 치코대학에 현지 연수를 합니다.

작년에 12명, 금년에도 12명 예정으로 되

어 있습니다.

컴퓨터 연수는 각 학교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의 대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사회과 지역단원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90년도부터 본도에 관한 것 그러니까 4학년 지역단원을 한 단원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본도 연구원에서 그 단원에 대한 교과서를 개발해서 교과서 주식회사에 보내면 사회과 4학년 교과서를 편찬할 때, 충북에 관한 지역 단원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연구하고, 우리 충북에 맞는 지역단원 교재 제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국 ETS 시험 결과에 있어서, 충북의 학교중 시험대상 지정교는, 시험관리 방법, 결과 분석에 대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ETS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이디케이셔널 테스팅 서비스(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 머리 글자를 딴 내용으로써 미국의 교육평가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는데는 것입니다.

첫째, 충북의 학교중 시험대상 지정교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는 제천 남천, 증원 금가, 음성 원남, 중학교는 옥천중, 보덕중, 영동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은 모든 학교에서 추천을 하려는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험관리 방법입니다.

첫째, 시험과목은 국민학교는 산수, 자연 중학교는 수학, 과학, 일자는 국민학교는 '90년 5월 18일이고, 중학교도 '90년 5월 20일 이었습니다.

감독은 책임자 소집 교육후 실시요강에 의해서 해당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감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처리문제입니다.

검사 후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산수, 수학 문제에 주관식 채점 테스트 화일을 만들어 캐나다 전산처리 센터에 보내며는 거기에 검증을 받아서 작성한 디스켓과 검사지를 본도에 송부하고 검사결과는 과목별로 문항 내용 영역, 행동 영역, 유층별로 결과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분석 내용입니다.

한국이 국민학교는 수학이 71.77로 전세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은 67.16으로 1위입니다. 연령은 8세 아동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13세 학생으로서 수학이 71.87로 2위입니다.

과학은 77.4로 1위를 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제가 말씀드린 평가원에서 하는 데는 점수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한 결과 책자를 입수해서 거기에 의한 분석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왜 세계에서 국민학교는 다 일등을 하고, 중학교는 1등, 2등을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교육열이 한국이 대단히 높다.

두번째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 교육열에 의해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는, 모든 학교가 사교력이나 탐구 학습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초·중등 교사승진 가산점 산정시 국립학교 근무 교사에게 우선점, 그러니까 우대점이죠.

가산점 부여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십니까

먼저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학교 근무 교사에게 우선점, 가산점

입니다.

가산점을 부여한 내용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4조 1항 5호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는 근무월당 0.021점씩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속학교는 연구학교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연구학교규정 교육부령 제594호 '91년 3월 16일자에 제8조에 의하여 국립학교의 부속 국·중·고등학교는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타 우대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이나 대책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 의정직무대행 김광수 : 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우선 제일먼저 김광수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본도에 유해업소 현황을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의 학교수가 888개교이고, 피해대상 학교수는 39개교

입니다.

그 중에서 '91년도에 총 유해업소가 60개 업소였는데, 7개업소를 이전 또는 폐쇄시킴으로 인해서 현재 53개 업소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8개 종류의 유해업소입니다.

그래서 이 53개의 유해업소는 '95년 12월 30일까지 완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예방·계도 활동을 강화해서 학생선도위원회를 구성하고, 반상회를 통한 유해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을 계도하고 있고, 또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데 이것이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관계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강화시키고, 학교입지 선정의 적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전국소년체전 대비 훈련실태와 예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년동안 중단됐던 전국소년체전이 부활해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금년도에는 4개지역에서 실시를 하는데 우선 대구에서 7개종목, 광주에서 7개종목, 경기도에서 4개종목, 전북에서 8개종목해서

국민학교가 13개종목, 중학교가 26개종목을 개최하는데, 저희들 본도에서는 전종목 선수 675명, 임원 125명, 계 800명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훈련 사항은, 국·중학교, 체육특기학교 육성종목별로 학교장 책임 하에 열심히 기량을 닦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에는 12월시부터 2월까지 지역 교육청별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도 교육청에서는 월 10일간씩 65일간의 합숙 강화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5월 8일로부터 9일까지 도 소년체전에서 우승하는 팀에게 30일간의 강화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 훈련비는 2억4천700만원이 됩니다.

본 교육청에서 예산에 확보 해 놓은 것은 9천758만4천원입니다.

부족액이 1억4천900만원인데, 도 체육회 지원예산이 4천451만원, 체육청소년부 보조예산이 3천654만3천원, 나머지 부족액 6천800만원은 추경재원으로써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세번째, 시·군 단위 도서관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의 도서관 현황은 12개, 그러니까 각 시·군에 전부 다 도서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충주하고, 증원군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12개 지역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거기에 좌석은 5천371석을 확보해 있고, 그 다음에 도서는, 장서입니다.

20만5천100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현황을 말씀을 드리며는 인건비가 11억2천2백만원 됩니다.

도서구입비가 4천8백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가 2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에 14억3천394만2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용자 수, 작년도 1년 동안에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학생들이나 일반주민들이 이용한 것이 85만3천85명이고, 또 이용한 책 권수는 39만2천704권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트라이 라운드(U·R) 대비의 교육강화 방안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6개 농고, 순수농고 4개 농고와 농공고등학교로 변한 2개 농고를 합쳐서 6개 농고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우선 우트라이 라운드(U·R)라고 하는 그런 교육적인 분야를 홍

보 계도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보교육은 유인물이나 또는 훈화나 교과지도 시간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그 다음에 농민교육센터 운영을 통해서 시범포 운영이라든가, 농기구수리센터라든가, 농민교육장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 기술교육의 차원에서 지역 고소득 작물지도, 농기계 기술교육 강화 자영희망자 기술지도, 졸업생 추수지도, 이와같이 3단계 걸쳐서 실시를 하는데 대개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주로 사과·배·매실 신선채소류·버섯류·화훼·약용작물·양계 양돈·양잠 이것이 아마 가장 고가의 수출품으로서 적절한 농산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종류를 세분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며는, 청주농고에서는 심비디움·풍란·백합 이것을 우선 집중적으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충주농고에서는 프리지아·느타리·표고버섯, 그 다음에 제천농고에서는 무릎·취나물, 진천농고에서는 진미·장안, 영동농공고에서는 심비디움·방울토마토, 이런데에 더 교육을 강화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고소득 재배 작물에 대한 재배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에, "전교조의 실체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 1989년 5월 28일날 이 전교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들 본도에 거기 가입한 선생님들은 202명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가지 계도와 또 적극적으로 비합법적인 단체임을 주시해서 거기에서 탈퇴를 하고, 역시 아무리 계도를 하더라도 탈퇴를 못한 22명만 해직을 당했습니다.

22명.

그리고 현재까지 나머지는 전부들 탈퇴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교원노조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들리는 이야기로는 간접적으로 무슨 여러가지, 22명 해직자가 전국적으로 천642명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복직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4월-5월이 1단계, 그래서 12월말까지 거기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교총과 교육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가입에 대한 것을 제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받을 분야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상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벽지학교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는데 아까 초등교육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등분야에 있어서는 다만,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등에는 한수중학교하고 영춘중학교, 영춘중 별방분교, 단산중·고 이렇게 5개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라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월 0.05점이 가산점으로 부여돼서 승진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점자 처리에 관계되는 것은 초등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재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고교입시중 과학실험문제를 출제 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중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 12월달에 실시하는 '93년도 고입 출제를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문에 보도난 대로 수학능력 테

스트에 입각해서 실시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학실험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는 것, 즉 현장에서 실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평상시에 한 사람이면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홍신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육천교육청의 교사 내신서 변조의혹과 청구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 대상 선생님은 부강공업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강경식 선생님입니다.

그 강경식 선생님은 중등 1정 화공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따라서 공고, 즉 실업계 고등학교를 50 대 50으로 다가 조절을 하고 실업계 분야를 더 늘리는 그러한 마당에 자원이 부족합니다.

공업계에 기계과, 전자과, 전기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중학교나 인문고등학교에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발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농고는 자꾸만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농과 선생님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농과 선생님들을 작년 겨울방학 동안에 40명을 기술과를 지도할 수 있는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를 받은 선생님중에서 우선 각 중·고등학교에 있는 공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발탁을 하고, 그 자리를 기술과 선생님이로 보충했습니다

그 대상의 한 사람이 강경식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강경식 선생님이 육천 안내중학교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데, 본인의 자격은 화공과 입니다.

충남대학교 화공교육학과를 나오셨는데, 그래서 또 그분이 컴퓨터 분야에도 조예가 있고, 또 청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컴퓨터과를 나와서 석사학위까지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강경식 선생님을 부강공고 화공과로 발탁을 한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 개채가 되지 않았다는해서 교장선생님과 교육청에 항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청이나 교육부에다가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 의뢰를 해와서 엇그저께 저희들 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진술을 듣고,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현재 여러가지 가정 형편상 육천에서 부강까지 근무하기가 조금 어렵지마는 참고, 또 자기가 '그 학교에 와서 근무를 하고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든다' 이라서 그것은 일단락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청주남중 럭비선수 강제차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입생이 746명중에서 국민학교 대체력이 좋고, 운동 선수로서 경력이 있는자중에서 35명을 1차 차출을 한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 3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럭비선수로서의 적성 여부를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부형들이 일부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 23일날 학생이나 학부모가 같이 럭비선수로서 반대하는 분들은 다 빼고, 순수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또 학교에서 심사한 결과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 22명의 선수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 야학지원 방안, 자활학교입니다.

현재 저희들 도내에는 자활학교로서 9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본청에서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충청북도 도청 청소년과에서 청주

시의 무궁화자활학교 외 4개교, 충주의 건국자활학교 외에 2개교, 제천의 청진자활학교해서 9개교가 있는데 거기에 백만원씩 해서 9백만원, 학생수는 21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선전 도교육청에서 잇단 행사의 적시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학생회관의 그 설립된 경위는 이미 조례 개정때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92년도 1월 1일 학생회관 조례가 공포 되었습니다.

1월 27일날 학생회관 관장이 취임됐고, 2월 15일날 학생회관 하부조직 직원을 발령을 했습니다.

3월 1일자로 학생회관 전문직 직원을 발령을 했습니다.

전문직은 초등에 연구사 한분, 중등에 연구사 한분, 운영과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연구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3월 1일서부터 19일까지 한 20일가까이 주변환경 정리를 해서, 그래서 20일날 개관식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은 애당초 계획에 입각해서 그대로 추진을 한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충북체육고등학교 기공식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가

'91년 완공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그 체육고등학교가 건립되는 부지 속에 만5천970평방미터가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을 못보다가 '92년 3월 17일 청주시로부터 건축협회가 통보가 돼서 그래서 우선 현재 금천고등학교하고 같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간에 생활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학교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고해서 작년서부터 이전한다, 이전한다 해서 학생들을 기만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라도 속히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시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홍보한다는 그러한 뜻에서 3월 25일부터 착공할 것을 전제로 해서 기공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김응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학능력 평가제도를 충북에서 타도에 앞서 실시하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이미 다 아시다시피 현재 중학교 졸업생들은 고등학교에 거의가 다 진학하는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94학년도부터 대학에 수학능력 테스트로다가 변환에 따라서 우선 저희들 도에서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입시서부터 서둘러 보자, 이래서 작년도서부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도 1년동안 준비를 하고 작년서부터 실시를 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조금 시기가 너무 빠르다 해서 1년간을 더 연기해서 금년도서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이것이 언어능력과 수리·탐구능력, 그 다음에 외국어 능력 이렇게 3단계 구분을 해서 하는데, 전 교과가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차례에 걸쳐서 학생들한테 직접 문제를 교육연구원에서 은행식 문제를 제작해서 거기에 대한 실험평가까지도 다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세미나도 초·중·고보 해서 3차례나 작년도에 선생님들을 모시고서 협의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도로서는 이만큼 했고, 또 금년도의 계획에 의하면 4차례 실험평가가 2차례에서 6차례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들에 대한 세미나를 2차례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금년도 12월달에 실시하여도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첫째는 이 교육과정의 정상화 운영입니다.

현재 상태로써 그냥 두면는 이것이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는 말로만 되지 실재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봅니다.

수학능력 테스트를 함으로 인해서 특별활동도 활성화가 되고, 또 다방면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초학년 적이고, 탈교과 적이고, 종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 출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책을 읽을 사람 책 많이 읽고, 또 골고루의 교과를 습득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출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준비가 필요 없고, 다만 중학교의 교육과정만 성실하게 이수한다고 하면 무난히 고등학교에는 입학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더 상세히 좀 말씀드릴까요?

○ 김응복 위원 : 됐어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김사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서 저희들 도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현재로서는 다섯개, 5개교가 있습니다.

충북과학고, 청주외국어고, 충주에 있는 증산외국어고, 그 다음에 청주기계공고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정밀기계과, 그 다음에 보은농공고에 자연농과 이렇게 5개교가 특

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체육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일반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교육부로부터 체육고등학교 하고 예술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며는 특수목적고등학교화 할 수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체육고등학교는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충북과학고는 30명씩 해서 60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외국어고등학교는 이것이 잘 P·R이 안돼 있는지, 또 학생들의 생각이 약간 좀 다릅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같은 계열의 외국어대학에 입학할 하지 않으면 혜택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사람, 두뇌가 좋은 사람은 이 외국어고등학교에 기피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 법과계통이나, 경상계통, 상경계통으로다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직까지도 인문분야가 높기 때문에 아마 좀 미달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75점이상의 점수를 득한 학생이 합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산외국어고등학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애당초에는 159점을 커트라인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원채 인원 미달사태가 많기 때문에 추가 모집 할 적에는 145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황을 청주외국어고등학교가 240명인데 지원자가 206명이 돼서 현재 각 학급에 26명 기준으로 참말로 이상적인 그러한 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산외국고등학교는 200명 모집인원에 지원자는 84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모집을 해서 약 40명정도 가까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기계공고는 245명 모집에 265명, 보은농공고 자영농과는 40명 모집에 38명, 2명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특혜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같은 계열의 대학에 입학 할 적에 비교평가 하고 내신성적에 대한 우대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특혜 조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해택, 금전적인 해택은 충북과학고등학교는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농공고 자영농과는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본인 부담은 10% 정도가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본인 부담은 즉 피복대, 또는 그 분야에 10%로 입니다.

기숙사에 식사비, 그래서 이것은 농수산부 또는 내부부, 또는 본청, 이런 기관에서

협조를 해서 자영농과반 학생들에 대한 모든 해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부에서 급식비하고 피복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고 학생들에 대한 학비감면 특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30명 단위로 해서 원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본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서 그 학생들까지에 대해서 장학금 제도를 둔다든가, 또는 경제적인 특혜 조치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앙고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고등학교에 예능계열 6학급하고, 7학급입니다.

7학급하고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에 인문과 9학급이 있습니다.

그 9학급이 졸업 맡으려는 내년에 가서는 미술과 한 학급이 졸업맡고 하려는 내년에 가서는 9학급이 됩니다.

됐을적에 이것은 예술고등학교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전신인 중앙고등학교 체제로써 현재 체제와 같이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번째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

습니다.

"보충수업 및 학원수강 규제에 관하여 규제이후 현재까지의 보충수업 실시와 학원수강 실태는, 규제 지시대로 안되고 있다면 교육청의 앞으로의 규제 방법은 "

첫째가 보충수업에 대해서 '80년 7월 30일 조치로 인해서 입시학원 수강을 전면 금지를 했다가 그다음에 '89년 8월 이후에는 1년동안에 5개월, 여름방학 하고 겨울방학 5개월만 현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을.

그래서 애당초에 3개 시·도, 서울과 충북과 그 다음에 부산 3개 시·도에 이것을 개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교육감님 회의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 교육감님때요.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더 연구·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현재까지 15개 시·도가 학원을 개방한 도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 도도 제가 학원을 전부 다 충주·제천·청주의 입시학원을 전부 순방을 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면서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이 청주,충주,제천 지역만 개방을 할 것이냐, 또 전체적으로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개방을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심사

사 숙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자율학습에 대해서는 이미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돼 있습니다마는, 학교장 재량에 위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학교에서 참말로 보충지도다운 보충지도를 하려고 한다하며는 교장의 권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즉,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충지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확실적인 방안인 것을 하지 말라, 본인에 희망에 의해서, 또 능력별로 반편성을 해서 우수자는 우수자들끼리, 또는 중간은 중간끼리, 또는 하위자는 하위자들끼리 반편성을 해서 본인의 희망 교과에 한해서 보충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우선 학교장의 교육열과 또는 그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희망과 부형님의 여론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교 입시제도 변경에 관해서는 전에 김응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올릴까요?

김사수위원장님.

○ 김사수 위원 : 언제부터 이런 구상을

한 겁니까, 그전부터 한 겁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러니까 작년도서부터.....

○ 김사수 위원 : 그렇게 아니라.....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제작년도부터 구상을 해서 작년에 실험평가까지 다 했죠.

○ 김사수 위원 : 글썄, 일선 학교서도 여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 관심이 크고, 또 학부형들도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제도를 별일간에 변경을 해서 질문을 해 본건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등학교 입시를 변경을 한다하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래서 그런것인데 한번 더 좀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더 구체적으로 설명말씀을 올릴까요?

○ 김사수 위원 : 예.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우선 뭐냐하라는 '94학년도'의 대학입시에 대해서 수학능력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발표가 나면서 부터 고등학교의 입시에 관한 것도 서서히 꿈틀거렸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그러한 작업으로 들어간 것은 제작년도에 거기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좀 협의가 있었고, 그 다음 작년도에는 우선 교육연구원에다가 수학능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은행식 오다(Order)를 던져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작을 해서 3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또 평가개발원에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선생님들까지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전환" 이라는 세미나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중·고 선생님별로 해서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본청 강당에서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금년도 계획은 우선 금년도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일단 수학능력 테스트에 입각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중학교에서 반 편성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자료이고, 그 다음에 국민학교에서 각 중학교로 평준화 지역, 청주지역은 평준화 지역이고, 여러가지 참고로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그 다음에 비교평가까지 하게 된다고 하려는 여섯번을 실시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에 대한 세미나도 두번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금년도 3월달에 교육감님께서 초·중·고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하는 석상에서도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교장선생님들간에도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반대 한다든가 이러한 여론은 한마디도 못들었습니다.

제가 수행을 해서 다녀봤는데, 그래서 현

제 부형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 1년동안 여러번 그러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달에 실시를 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연구원에서 이 출제를 참말로 수학능력 테스트에 입각한 출제냐, 아니냐.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심혈을 지금 기울이고 연구를 하고 있고, 요 일전에는 대학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수학능력 평가에 대한 강연도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김사수 위원 : 좀더 외문사항 있는데 보충질문때 질의 하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그 다음에는 박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컴퓨터 교육에 있어 우수학생 조기 선발 및 체계적 지도와 관련하여 '체계적 지도'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우수학생 조기선발은 이것은 지금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어 있는것이 국민학교 4,5,6학년, 그래서 국민학교 4학년은 연간 2시간, 5학년은 4시간, 6학년은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학교 4학년, 5학년까지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정도를 만져보는 상태입니다, 교육과정상에.

그 다음에 6학년에 가서 연간 8시간을 다루게 된다고 하며는, 아마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루는 베이직 정도의 기초 초보까지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한도까지가 현재 교육과정상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엇이든지 너무나 강해지고서 학부형님들이 강해서 국민학교 학생들도 전문대학 출신에 컴퓨터를 배운 학생 수준에다 끌어 올리려고 하는 욕심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도 많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원에를 보낸다, 야단법석을 하는데 사실상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컴퓨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정도만 알면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컴퓨터를 체계적으로 이수시키는데 있어서는 3단계로 나뉘져 있습니다.

첫째 단계가 30시간, 둘째 단계가 60시간 3단계제가 122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 교사가 체육과를 막론하고 전 교사가 전부 다 컴퓨터 요원이 되고, 컴퓨터에 대한 문맹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단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연수를 시키는 것이, 그 말을 "체계적" 이라고한 말을 인용한 겁니다.

다.

그래서 초급과정은 컴퓨터와 친숙해지는 과정이고, 중급과정은 컴퓨터의 조작기능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급과정은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3단계를 "체계적" 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원 컴퓨터 연수에 있어 고교 310명의 이수시간은, 초·중교사는 컴퓨터연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인가, 초·중교사도 연수한다면 몇명인가"

고등학교 교사 310명의 이수시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 교원이 컴퓨터에 대한 문맹에서 탈피시키기 위해서 기초과정 32시간, 심화과정 68시간, 전문과정 122시간, 이렇게 해서 기초과정은 200명, 심화과정 50명, 전문과정 30명해서 280명, 그 다음에는 자격연수를 위해서 360시간 30명, 그 30명은 현재 상업계 교사로서 컴퓨터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상치교사라고 하는 레테르(letter)가 붙기 때문에 선생님을 360시간 이수를 시켜서 부전공 자격을 주기 위한 연수입니다.

이것이 310명에 대한 연수이고, 그 다음에 초등과 중학교 교사 컴퓨터 연수는 천 12명 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국민학교에 기초과정이 445명, 심화과정이 316명, 전문과정이 80명해서 841명과, 또 중학교에 기초과정 95명, 심화과정 54명. 전문과정 22명해서 171명, 이것은 교육청 단위로 각 교육청에 컴퓨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을 가지고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수 여비가 4천190만원 초등이고, 중등은 873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비치된 학생용 컴퓨터는 대부분 사장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전담지도 교사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로 보아 컴퓨터 운영의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원 컴퓨터 연수비용 대폭 줄여서 실기교사를 채용, 지도를 한다면 현행법상 가능한지"

지금 컴퓨터가 사장이 꽤 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도에 국민학교는 한국통신공사에서 컴퓨터를 '96년도까지 100% 보급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40%가 지금 저희들 도는 추진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는 교육부의 실업교육과에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인문계고등학교는 교육부의 과학교육과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도내 상고는 거의가 다 컴퓨터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5년도까지 컴퓨터 보급 완료가 완성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 도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어느정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선 숫자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학교는 교사수가 4천973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를 다 조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기르는 대상자가 역시 똑같이 4천973명입니다.

그런데 '90년 이전에 2천56명이 이미 3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았습니다.

'90년도부터 '92년도, 금년도 계획까지 넣으면 2천364명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금년도 계획 841명을 넣으려는 국민학교 선생님들은 4천420명이 컴퓨터 연수를 다 받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받은 그러한 통계는 88.9%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3천15명중에서 대상 선생님은 909명입니다.

이것은 우선 뭐냐, 실과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과 수학과·과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전부 컴퓨터를 조작할 능력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해서 100%입니다, 중학교는.

전부 다 받았습니다.

중학교는 909명이 초과해서 현재 숫자로 말씀드리면 천141명이 됩니다.

이중으로 자꾸만 받고 해서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3천387명중에서 497명이 대상이 되는데, 역시 여기도 715명이 받았습니다.

100% 해당자 선생님들은 거의 컴퓨터에 대한 30시간 이상의 연수를 다 받았다고 하는 숫자상의 통계입니다.

이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내에서는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각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지도 못한다고 하는 그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장한다거나, 또는 우리 학교는 컴퓨터를 지도할 선생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를 다 보아도 국민학교도 전부 컴퓨터 연수를 거의가 다 받은 상태인데, 왜 컴퓨터를 연수를 받았지마는 기피 현상

을 가져오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과 후에 특별지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현상이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서, 연수하는 예산을 가지고서 실기 교사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실기교사는 상업과·농업과·공과에는 실기교사가 있습니다.

실기교사는 교단에 서서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다만, 조교로서 실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실기교사이기 때문에 현재 공고나 농고에 지금 계시는 실기교사 선생님들이 아주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는 본인들 보고 대학을 다니든지, 대학원을 나오든지 해서 본인 스스로가 검정고시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 실기교사를 둔다고 하는 것은 법으로는 국민학교는 못두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학교에는 특수학교, 특수학교에는 실기예선 둘 수 있으되, 기타 국민학교는 특수교사는 둘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고등학교예선 실기교사는 농·공·상 분야에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기교사 이용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본도에 연수 상태로 봤을 적에는 능히 다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선생님들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 선수의 훈련과 선수의 확보는 초·중·고별, 종목별, 지역별로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첫째, 선수훈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수선수 200여명을 선발해서 월 10일간씩 65일간 합숙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 종목은 학교 자체로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5월 8일, 9일의 도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팀에게 30일간의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경기 본선은 20일간 훈련을 실시할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선수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각 경기 단체별로 경기 실적을 참고해서 200여명의 선수를 선발 확보 했습니다.

단체 경기는 각 경기 단체별로 평가회를 거쳐서 역시 5월 8일, 9일 도 소년체전에서

최종적으로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종목 계열화는 지역별 종목군, 그러니까 초·중·고를 연계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옥천지역은 배구·농구, 충주지역은 배드민턴·테니스·여자체조, 제천지역은 하키·배구·사격, 음성지역은 정구·싸이클 이런 경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강화 훈련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고교생 2학년 학생들에 대한 단재교육원에서 수련하고 있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가치관 교육과 윤리 도덕성 교육은 총 교육시수 중 몇 %가 되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총 38시간 중에 8시간을 국민윤리, 도덕성 교육에 대해서 시간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약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교 후 동료 학생들에게 여하히 전달되는가", 귀교 후에 전체 조회시간이나 또는 홈런(H·R)시간 또는 특활시간을 이용해서 학급별로 또는 학년 단위별로 보고회를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수련생으로부터 수련 소감을 우선 받습니다.

작년도에는 수련 학생수가 2천520명이 단재교육원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련소감을 받고, 그 다음에 10명내지 15명이 한시간에 그 소감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다짐편지라고 해서 그 학생들이 각 학교에 돌아가서 또 역시 2천520명 학생이 다짐편지를 단재교육원의 연수지도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사님이 그 다짐편지를 전부다 숙독을 하고 해서 6개월 후에 본인들한테 다시 환원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채택해서 아마 단재교육원에서 수련을 받고 가는 학생들은 스스로 그 학교 나름대로 홍보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생수련 활동 연 인원 16만520명, 사회체육과 15만천명, 중등장학과 9천520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등교직과 역시 마찬가지로 가치관 교육과 윤리 도덕성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야영장에서 수련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첫째가 청소년의 심신을 수련하고 정서를 순화한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학생 스스로가 행동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천막을 친다든지, 취사를 한다든지 취침하는 그 자체를 중요과정으로 이렇게 이수시킬 것이고, 자연히 가치관이나 윤리 도덕교육은 별도로 이 수련장에서는 항목에다 넣지 않고 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취득토록 단체 생활을 통해서 협동심을 통해서 이루어 지도록, 이렇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서 순화, 가치관 함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교 후에는 학생들 거의가 다 그 학교의 동학년 전원이 다 진천종합야영장이나 각 야영장에서 수련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지도 후에 특별히 전달교육은 없고, 서로 동료기간에 있어서 서로가 수련생활에 대한 대화를 통한, 그러한 홍보교육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92학년도 생활지도 계획에 국민정신, 도덕성 분야와 근면성 교육이 삽입되었으면 합니다" 하는데 대해서 우선 생활지도 계획에 독립적으로 이 "국민정신 도덕성 분야", 또는 "근면성" 이것을 독립적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건전생활 태도 확립에 가치관 정립 지도시에 교과와 연계지도할 수 있게끔, 어느 교과든지 전부 다 연계지도를 할 수 있게 했고, 또 초청인사를 초빙을 해서 지도

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련활동, 또는 야영활동, 또는 생활관 교육 이런데에도 이 모든 정신교육이 다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단위 설정을 안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교 1기관 도에서 육성종목을 지정한 것인지, 각 학교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라면 학교별 중복은 알고 있는지"

우선 학교별 육성종목 지정은, 이것은 교육법시행령 제69조 3항과 동법 제112조 11항에 의거해서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는 금년도에 국민학교 112개교, 중학교 76개교, 고등학교 55개교를 육성종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교 1기관 각 학교의 전종 종목으로, 전종적으로 중점 육성시켜나아가는 종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덕성국민학교 · 대성중학교 · 청주상고는 축구, 내수국 · 내수중은 체조, 일신 여중 · 고는 핸드볼, 이렇게 연계해서 지도하는 그러한 것을 1교 1기관고 이렇게 육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정 종목을 받지 않는 그러한 학교는 교장선생님이나 체육선생님이 협

의에 의해서 그 학교 특성에 따라서 1교 1기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복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김응복 위원 : 아마 한 2시간을 끝었는데 12시도 되고 해서, 오전 질문 듣는건 이걸로 마감을 하고서 점심시간 갖은 다음에 오후 2시부터 다시 개의 하기를 동의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등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고 할까 싶어서 그랬는데요, 위원님들 의향은 어떻습니까?

○ 이상일 위원 : 너무 지루해서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그러면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지금 박병해위원님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박병해위원님 그 답변만 끝나고서, 이렇게 하는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두가지가 남았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그래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러며는 “1인 1운동은 각 학교별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인 1운동은 국민학교 상급학년부터 학교 교육을 통하여 평생체육의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학생 각자의 취미와 소질에 따라서 동호인클럽을 조직해서 방과후 또는 휴일, 또는 토요일 오후에 자발적인 참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담당교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호교사 정원 24명이 배정되면 각급 학교별로 몇 %나 확보되는 것이며, 언제 확보가 가능한가, 양호교사는 현행법상 보건위생에 대한 수업지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국·중·고·특수학교까지 해서 452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69개교가 되어 있고, '92년도에 확보할 계획은 24명 양호교사를 확보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4월 1일자로 17명이 확보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42.7%가 확보돼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2년도 금년도 8월달까지는 중등 분야에서 확보를 한다고 하면 아마 70-80%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호교사에 대해서 “보건위생

에 대한 수업지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호교사는 학교 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여기에 의해서 양호교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고, 또 양호교사는 보건위생에 대한 지도를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 2항 제1호의 양호교사 직무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만은 지도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런데 대개가 일선에서 경험을 한 결과로 봐서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는 교련과 선생님들, 중학교에는 가정과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양호교사를 교단에 세우는 일은 극히 드문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개회하고 이제까지 휴식시간을 안 주고 장장 두시간을 이렇게 했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14시 00분)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오전에 계속해서 오후에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박병해위원의 답변까지 듣고, 권혁풍위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중등국장님은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계속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권혁풍위원님이 질문하신 첫째 문제로서 " '92학년도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선발기준 및 현황과 과목별 배정 인원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발 기준은 과목별로 자격연수 대상자 순위명부에 의거해서 20명을 지명하되, 그 다음에 과목별 최고 득점자에게 1명씩 13명을 배정 했습니다.

그 중에서 타 과목과 비교해서 점수가 현저히 낮은 과목은 교련과하고 가정과, 두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현재 고교 체제로 인해서 상업계 고등학교 공립이 7개교로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감 자격증 소지자가 극소수이어서 현재 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과에 한명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수학과에는 또 역시 교감 자격증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수학과에 1명을 추가해서 15명을 배정을 했고, 그 나머지 5명은 전문직에서 5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 전문직은 잔여인원이 상응적 경력이 2년 이상인 전문직 중에서 장학사 3명, 연구사 2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있어서, "교원의 누락경력 인정 현황은" 중등 분야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신청건수가 469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한 것이 400건이 처리되었고, 60건은 증빙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인정을 못했습니다.

세번째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충청북도 학생회관 시설에 대해서 어제께 관리실의 프토테이지가 너무 많다는데, 사실상 다시한번 확인 검사한 결과 불과 190㎡로서 4%이고 기타 휴게실 및 보일러실, 전기실, 화장실, 소회의실, 숙직실, 물탱크실, 기타해서 계단이라든지 통로등이 포함된 부대 시설까지를 합치며는 39%가 됩니다.

그 부대 시설이 35%가 돼서 실지로 관리실은 4%입니다.

네번째 답변으로서 " '95학년도 교육과정 내용 결정권 40% 지방이양에 대한 준비 상황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는데

'95학년도 부터 시행하는 6차 교육과정은 '92년 6월에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총 단위수가 204단위중에서 교육부에서 공통 필수과목으로 86단위 42%입니다.

시·도 교육청에서 과정별 필수과목 106단위 52%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장 재량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편성 할 수 있는 단위수가 12단위 6%, 이것이 확정 고시가 된다고 하려는 저희들 본청에서도 거기에 대응해서 각 필수과목의 결정을 위해서 교과별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 연구활동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입성적 분석표 공개 결과는, 그리고 그 성적이 저조하다고 담당 교사 등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전인교육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92년도 1월 10일날 4시 일반계 고교 신입생 선발고사 합격자 발표를 위한 지역 교육청 고입 담당 장학사 회의시에 지역 교육청별로 '92학년도 고입 선발고사 학교별, 과목별, 성적 일람표를 배부해 올렸습니다.

그것은 장학 자료나 학교에서 학교관리에 참고토록 그렇게 올렸는데, 아마 일부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그 학교에서 성적이 부진한

그러한 교과 담당 선생님을 불러서 좀 충고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열에 입각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의 장학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궁한다 해서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자기 학교에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전원 입학할 수 있는 하나의 교육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 제 가산점 계산이 년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뀐에 따른 문제점" 이것은 초등학교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중등도 같이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및 인사원칙의 제정 근거"도 초·중등이 같이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가산점 산정시 국립학교 교사 우대 근거도 초·중등이 같이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김응복위원님과 김사수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을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93학년도 본도에서 실시하는 고교 입시를 수학능력 평가로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우선 김응복위원님이 "교육적인 효과는 무

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상세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에 수용되는 것은 전원이 다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 도에 금년도에 92%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순지식 강제 편중된 고입제도에 거기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문제해결력, 사고력 중심의 고등정신능력 평가로의 전환을 통해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서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4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에도 전향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학교에서부터 미리 그런 훈련을 쌓아 놓는 것이 본도의 대학 입시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각 교과의 균형적 발전을 잃어 편중 지도의 염려는 없는가" 영어능력, 수리탐구능력, 외국어능력으로 나누어서 평가 되었지마는 중학교의 전 교과목에서 출제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수학·국어·영어에 편중되지 않나 이런 염려도 됩니까라는 중학교 12교과를 통털어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우려에 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이 제도를 확정하기 까지에 어떤

경로와 일선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91학년도 초부터 전문직 연수에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전 수 해왔고, '91학년도에는 8월21일날, 11월 30일날, 2월14일날 3회에 걸쳐서 실험평가를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차례의 평가지도 제작 보급을 하고, 2차례의 실험 평가를 실시 하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2번 실시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수학능력시험 연찬회를 2번을 통해서 일선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보완해 나아갈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네번째는 "일부 신문 보도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이 있다는 데 여기에 대책은 무엇인가", 엇그저께 수학능력 테스트 평가에 의한 심의회를 마지 막으로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중등장학과에서는 중학교나 교육청에 이달 말까지는 세부 지침이 하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여론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연찬회, 교수학습 방법 개선 세미나, 각종 홍보 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를 해서 이해가 부족한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이것은 작년도서부터 실시 할려고 했던 것이 1년이

더 연기 됐기 때문에 저희들 도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또 말썽이 많은 보충지도를 서서히 없애는 그런 방향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특별한 지도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중학교 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만 운영이 된다고 하려는, 고등학교 입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속히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사수위원님께서 "조금하게 '94학년부터 실시할 이유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91학년도, '92학년도 2년에 걸쳐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한 결과 조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관계관계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먼저 김광수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께서는 "학교 통·폐합에 따른 버스운영 사항과 학교 통·폐합에 따

른 장단점, 그리고 장점이 있다면 적극 권장할 의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 통·폐합의 추진 배경은 '80년대 후기 고도 산업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농촌 인구가 급격히 격감하고 따라서 지방에 있는 학교가 영세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인성 발달이나 사회성 개발등이 대도시에서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는 '80년대부터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과 분교장 격하를 적극 추진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가 있고 이것이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 되기까지 이르는 시책 사항입니다.

'82년에서부터 '92년 3월까지 통·폐합된 학교의 실적을 보며는 분교장 격하가 90개교이고, 폐교된 분교장 포함해서 학교는 66개교 되었습니다.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통학버스 운행 사항은 승합버스 48대를 구입을 해서 천607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며는 장점으로서 2복식, 3복식 수업의 해소로 교육과정 운영에 정상화를 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 및 교육제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예산에 상당한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측으로 봐서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재학하므로 인해서 인성 발달이나 원만한 교우관계등 사회성 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관련한 각종 행사에 통학버스를 운행하므로 인해서 교육과정과 관련한 각종 행사 및 고적지 답사시에 버스를 활용하는 이러한 편리점도 많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려는 도로 여건이 불량한 곳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폭우나 폭설로 결빙시 운행 곤란으로 수업 결손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볼 때에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시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통·폐합의 장점을 계속 살려서,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문제점은 보완하면서 통·폐합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폐합을 적극시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통·폐합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일위원님께서서는 교실에 연탄 및 장작난로 대체 계획, 숙직실 난방, 학교 운동장 배수로 문제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김광수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의 수세식 개량 문제는 농촌에 일률적으로 이것을 하실 문제가 아니고 상·하수도 설치등 개량 여건이 조성된 읍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화장실 수세식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의 연탄 및 장작 난로 대체 계획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90년도부터 시작한 환경개선 특별사업비로 연료를 대체하는 문제가 있었습시다마는, 저희들 도에서는 이중창 설치를 하는 것이 여러가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중창 설치 사업을 우선 추진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난로는 내구 연한이 짧고 편리한 점도 있습시다마는, 내구 연한이 짧고 열량이 낮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실정에 따라서 연료대책을

학교장의 재량으로 마련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직실 난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직실 난방 관계는 연탄을 사용하는 학교수는 전체 479개교중 287개교가 연탄 보일러를 숙직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연탄가스 사고 건수는 2건이 되었습니다.

피해 상황은 삼성중학교에 1명이 연탄가스로 중독이 된 바 있습시다마는, 즉시 병원에 입원을 해서 회복이 됐고, 또 노은국민학교에 있는 1명은 현재 다른 합병증이 있어서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연탄가스 사고가 난 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유류보일러로 교체토록 행정지도를 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수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심야전기 난방시설을 적극 권장하라"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학교장 판단하에 적극 설치토록 권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일위원님께서 당직비 인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전부 5천원으로 당직비가 인상이 됐는데, 우리도만 3천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타 도와의 균형을 맞춰서

5천원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제1회 추경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시에 5천원으로 인상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학교에 배수로가 없어서 우천시나 해동시에 배수가 안되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시설되며, 신설 학교에는 배수로가 시설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존 학교에 대한 배수로 설치하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장 시행 여부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신설 학교에 대한 배수로 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신설학교에는 배수로를 시공토록 해서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첫번째가 " '91년도 시설공사중에 설계용역을 준 공사 현황은 얼마나 되며, 용역 업체는 어디인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1년도 시설공사중 설계용역을 준 공사는 충북체육고등학교 신축 설계용역 외 9건

으로 금액은 1억3천746만원이며, 용역업체는 공간·구성·당지 건축사무소등 3개 업체입니다.

공사 설계용역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희위원님께서 제천여고의 강당과 보은농공고의 체육관 신축과 관련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 강당·체육관 신축에 따른 기준은 어디 있느냐", 또 "제천여고의 강당 신축에 있어서 체육관으로 설계변경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당이나 체육관의 설계는 교지 면적이나 건물의 배치도, 주위 시가지등 전체적인 조화면에서 학교장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여고는 현재 250평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제천여고 강당에는 배구·농구 경기는 가능토록 이렇게 시공이 돼 있고, 보은농공고는 384평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아마, 보은농공고는 보은지역에 체육관이거나 강당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규모를 상당히 키워달라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나 동문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재원형편상 규모를 늘리는 것을 상당히 좀 주저한 바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사회나 동문회에서 "일반회계측에서 추가로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비를 부담토록 하겠다" 하는 간곡한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규모를 늘렸습니다. 다만, 만일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우리가 작년도에 충주농고 강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충주농고 강당 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충주농고 강당도 상당히 처음에 규모를 키워가지고 바닥면적도 넓히고 상당히 여러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설계했습니다. 다만 재원 조달이 안돼 가지고 몇 년 끝다가 나중에는 높이도 낮추고 충주농고 실습지를 매각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지역사회 요망이나 이런 데 상당히 부응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으며는 해드렸으며는 좋겠는데 현재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심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 '91년도 입찰공사중 전부 하청이나 도급을 준 공사는 얼마나 되고, 앞으로 전부 하청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가" 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설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입찰공사중 전부 하청이나 도급을 준 공사는 저희들이 승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하청이나 도급을 막을 대책은 계약 할 적에 공사도급 계약시 하도급 제한규정을 주시시키고, 공사감독등을 통하여 하도급 위반사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위반사태가 발견 될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의법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천여고의 공사관계를 저희들이 보니까 현장 기술자의 수첩은 계약업체가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희위원님께서 " '91.시설사업중 설계용역 현황과 그 사유 및 표준 설계도면 활용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설계용역 현황을 보려는, 총 설계용역 건수는 11건에 설계용역비는 1억4천84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설계용역 분야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실, 기숙사, 강당, 급식소 등 표준 설계도면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시설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사유는,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5조 및 제6조, 건축사법 제4조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허가대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설계도면 활용 실적은, 교실 증·개축과 변소 개량등 간단한 사업에 대해서는 표준 설계도면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표준 설계도의 활용 실적은 '91년도에 3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년도에 확정, 활용해 온 표준 설계도면은 그동안의 교육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내용이 많아서 시설사업 예산 편성시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여 발전된 교육시설을 제공토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시다라는 공사가 잘된 표준 설계도면이 없다하더라도, 공사가 잘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군데를 표본으로 적출을 해서 그것을 다른 학교 공사 현장에도 저희들이 적용을 할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희위원님께서 "청주·충주·재천시에 중학교 추첨에 의한 학구제를 적용

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무시험 추첨에 의한 학교 배정은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기하고, 세칭 일류학교등 특수학교를 선호하는 이러한 경향과 또 좋은 학교에 집중화 되는 현상을 방지해서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학구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를 시행하는 본래 목적에 좀 어긋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중학교 추첨 학구제를 폐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학구제를 정한다고 하려는 현재에 있는 남·여 중학교가 남자중학교, 여자중학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남·여 공학으로 전면적 개편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시지역에 소재한 중학교간의 거리와 학생분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학구설정에 상당히 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 도심에 있는 학교를 선호하고 또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라든지 그런데는 또 기피를 하고, 또 일부 학교에는 집중화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또 위장 전입 문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논의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고, 다음은 홍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산남국민학교, 을량국민학교, 가경국민학교 등 신설학교 개교 준비가 미흡해서 언론에 보도 돼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말씀이 개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92년 3월 1일자로 청주시내 3개 국민학교를 개교 하게 되었습니다.

개교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사 본관이라든지 교실등은 완전히 준공 됐습니다마는 담장이라든지 기타 운동장 조경이 약간 덜 됐기 때문에 준공 검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일부학교는 개교일자와 준공날자가 겹쳤기 때문에 동일자로 준공검사를 하지 못해서 신문에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남국민학교는 3월12일자로 미비된 사항이 정비가 돼서 준공검사 처리를 했고, 가경국민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교일과 준공처리 일자가 중복돼서 이 일로 미 준공처리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경중학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장 및 정문을 설치하지 못해서, 추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한 후에 준

공토록 하겠습니다.

교실이나 본관 교사는 하등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말씀 드리고, 다음은 김사수위원님 건, 아까 중등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풍위원님께서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 명칭 그대로 근무 시간외에 기관장의 명을 받아서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명에 의해서 체육특기생을 지도한다든지, 특별활동을 지도한다든지, 교외생활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시간외에 근무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목으로 수당이 나갈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책정액 보다는 지출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의 근무를 안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이 안된 것이고, 해서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도 학교장의 명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당직자가 근무한 사실이 확인이 되며는 월말에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권혁풍위원님께서 학교안전공제회 예산집행기준의 하향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 학교안전공제회가 발족해서 운영 할 당시에는 기금을 둔 후에도 더 조정을 해서 대형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10만원이하는 지급 안하는 걸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행정 간담회라든지 기타 출장시에 일선 학교에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 "상한선·하한선을 둔 것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1월 17일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보상금 지급규칙을 개정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 1일부터는 보상금액에서 하한액을 없애고 소액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금년도 2월 28일까지는 보상금 신청을 하려며는 상당히 구비서류가 여러가지 제출돼서 복잡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절차를 간소화 하는 차원에서 구비서류가 8종 되던 것을 4종내지 2종으로 이렇게 간소화 해서 그 여러 복잡한 문제를 간소화 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장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충호위원님께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교육비 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학교교육비 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는 교당 경비가 초·중·고 공히 69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629만원이 배정됐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10% 인상된 692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당경비는 초·중·고 공히 66만원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60만원을 배정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10% 인상된 66만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당·급당 경비를 학교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배정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여러가지 검토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돼서 당장은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을 본다고 그러며는 각 시·군별로 학생수 및 학교수, 그리고 소유 재정 규모가 상이하야 재원 배분에 있어서 형평 유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와 같이 배정하는 것이 지역 교육청간에 형평도 유지가 되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학생 1인당 재정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도내 전체가 학생 1인당 재정 규모를 보며는 도내 전체가 116만원인데, 청주는 75만9천원이 되고, 단양지역을 보며는 1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학교운영비를 비교해 보니까 도내 전체는 10만원인데, 청주는 4만7천5백원이고, 단양지역은 13만9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학생 1인당 교급당 경비도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도내 전체는 1인당 3만원이고, 청주지역은 만9천원, 단양지역은 4만7천원, 이렇게 되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위원님께서도 국민학교 통·폐합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통·폐합의 기준을 완화 할 용의는 없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고, 또 "도간 경계에 있는 학교의 학교중심 학구조정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통·폐합 기준 완화의 경우에는 아까 김광수부위원장님 질의 답변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획일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지역 실정이나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기준보다는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간 경계에 있는 학교의 학교중심 학구조정 용의는 없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행 국민학교의 학구는 학교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도간에 통학 구역을 넘어서 교육을 실시할 때는 교육법 제8조 제5항과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 교육청간에 협의로 학구조정이 가능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간에 합의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 도 경계에 있는 학교에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애로가 해

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님들의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보충질문은 의사를 취합해서, 그리고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한 10분동안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15시 00분)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을 들으신 다음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위원님은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은 자리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데 이재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 제가 질문한 사항은

답변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 관계관들도 전원이 간부급은 참석이 됐고해서 타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좀더 진지하게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관리과 소관으로 입찰공사중 전부 하도급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시설용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제 천사에서 시내 포장공사를 하는데 그 깊이를 60전을 파야 된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관내 시의원들이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업자들한테.

그럼 어느 지역은 한 20cm 밖에 안팓습니다.

그러니까 시 건설과장 불러다가 호통을 쳐가지고 즉각 즉각 시정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기초단체에서의 공사같은 것은 전부 하도급이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근절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도 일선학교에 좀 다니면서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 교육청에는 그 교육청 관리과에 시설계 직원도 적고, 본청에도 적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인력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선의 현장에 가보면 교묘하게 전부 하도급을 받아도 현장 소장 하나만 신

분증만 받고 그러면, 그게 다른사람 수사권이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위장이 되고 그러는 적이 허다하게 많은데, 그래서 이 관리계통에는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수시 연락하시며는 대개 지적사항을 적발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초단체 이런데서는 아주 그전 하도급 공사가 일절 중지 되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은연중에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며는 이것도 좀 문제가 안되겠나,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에 대해서 지난해 나간 금액이 1억4천만원 가까운 액수가 지출이 됐는데, 아마 이게 매년 특수지역에 건물을 신축하다 보며는 설계용역을 주게 마련일 겁니다.

그런데 보통 약 한 7급기사,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 한분 1년 인건비를 보며는 약 한 3천만원 정도, 차라리 인력감사를 다시 해가지고 교육본청에 기사 정원을 해가지고 자체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시면 수시로 필요할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더 안좋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건 부탁이지 질의가 아닙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감사합니다.

질문은 우리들이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

○ 홍신희 위원 : 없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그럼 김사수위원님.

○ 김사수 위원 : 제가 질문한 2항 보충수업과 학원 수강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중등국장님 말씀이 "가담을 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은 학원에 지금 전부 출입을 하고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고 묵인해 둘 거냐, 그렇지 않으면서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할 거냐, 뭔가 교육청으로서의 의사 결정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고교입시 개선 문제인데 지금 중등국장님께서 추가로 한참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답변하신 것은 소름하고 해서 좀 추가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다가 답변을 또 해주시고 해서 질문은 하지 않고 부탁의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개선하여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세간에서 떠들기를 문교정책은 조령모개다.

이래서 사회 지탄을 받고 있는데, 특히 입학시험에 대한 개선문제는 이러한 의사를 결정하는데는 교육감의 의사결정을 하는데는 그야말로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직접 관계가 있는 학생이나, 학부형이나 선생님들의 의견을 또 그양반들의 여론을 의식해야 됩니다.

해서 그 의견이나 모든 좋은 방법을 수렴을 해서 더군다나 처음 충청북도에서 시도해가지고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니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쪼록 여기에는 시험문제 내용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연구를 아마 할 것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더더욱 연구를 하셔서 참 좋은 입시제도였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감사합니다.

박병해위원장님.

○ 박병해 위원 : 예, 컴퓨터 지도관계한가지만 보충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초·중·고 교사들의 개인당 이수시간 이런 것 까지

도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며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냥 학교에 들어가 있으며는 거의가 다시 활용할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배운뒤에 컴퓨터를 자기 것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계속 훈련을 해야 겨우 가르쳐줄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학교에 와서는 일체 그것을 할 사이도 없고, 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너무 열심히 하다보면 그 학교의 모든 지도는 자기 부담으로 돌아오기 쉽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일체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에서 생각 할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했으니까 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한번쯤 감안을 해서 실업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들을 정말로 좀 상세히 알아서 실기교사를 채용하지 못한다고 하려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국가적으로 아주 절실히 느껴지는 컴퓨터 교육을 내실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대책을 세워줘야 될것 아닌가.

우리가 얘기하는게 " 학교마다 그렇지 않은데 왜 자꾸 지금 안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어떤 대책을 제도화 할 정도로, 그 학교에는 어느분 어느분은 컴퓨터를 정말로 애들한테 가르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수업을 좀 덜 하더라도 이런걸 좀 열심히 가르쳐 주게 하는 이런 제도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학생들 야영훈련을 한다든지 학습원에 가서 어떤 교육을 받는다는지 할때도 학생들 역시 똑같이 20%면 20%로, 30%면 30%에 해당하는 윤리도덕성·가치관에 관한 이런 어떤 강의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들하고 협동정신을 이끌고 실천을 해보고 여러가지 그 가운데 다 느끼고 한다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거기서 찾아내기는 꽤 어려울 겁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역시 특수한 어떤 시간을 좀 공간을 만들어서 제도화 해서 아주 우리 도내에는 이런 훈련장에서도 이러한 한도내에 어떤 윤리·도덕, 이런것은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이게 될 수는 없는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셋째번에는 1인 1운동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조금 이게 달리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초·중·고를 막론하고 운동선수 외에 자각해서 자기가 운동하는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이 나약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학교의 전체 학생들이 벗

고 나와서 마스게임을 할 때 한번 보세요.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비대한 아이들이 꽤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례해서 강건한 학생들은 그 학교에 대개 몇 %나 되느냐, 하는 것은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그렇게 강건하게 키우려고 하지 않고, 체육교사들은 체육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그 학교의 규정종목을 육성하는데 급급하지 전체 학생들에게 1인 1운동을 권장도 안하고, 권장을 해도 말로만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럴때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그렇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렇게 기른다고 하면은 아저 어떻게 될 거냐.

만일 어떤 사태가 기울어졌을 때, 북하고 남하고 애들을 비교해 본다면은 참 큰 문제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로 절실히 요망되는 강건한 체력을 기르는데 학교장들이 1인 1운동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극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

이렇게 세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권혁풍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

문을 하고 나머지 또 부탁말씀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학능력 평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참 대학입시에 '94년도부터 적용되는 수학능력 평가에 연계를 해서 우리도가 먼저 한다는 선도성이라고 할까,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 집니다.

그래서 새롭고 기대가 많이 가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종전에 단순 암기력 평가에서 고등정신능력 평가로 바뀐다는 그런 시도 자체가 우리도로서 상당히 앞서가는 교육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게 보여 집니다.

그러나 좀 우려되는 것이 있고, 의문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나.

우선 수학능력 평가가 탈교과적이고 통합교과적이고 초학년적이다.

이런 성격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통합교과가 먼저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된 상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예를들면 "사회" 할것 같으려면 "일반사회·국사·도덕" 이것이 어떻게 통합이 되어서 통합사회과가 완전히 정리가 되어서 실제 학교에서 적용이 된다는가 하는 상태

가 되어 있는가, "과학"하마는 "생물·물리·화학·지학"이런 것이 완전히 통합돼서 제대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에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준비상태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어떤 "초학년적"이다 할때 어떤 대학에서 보는 학점제도 같은 것이 있어서 3년 동안에 배울 것을 어떻게 조기 졸업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하는 것이 하나 또 의문입니다.

또 한가지는 단순한 수학능력 평가라면 어떤 인지력, 이해력, 종합력, 평가력, 분석력 같은 이런 정신능력만 평가하는 건가, 아니면 태도라든가 행동평가, 도덕성, 정서력 뭐 이런것 까지도 척도가 개발이 돼 있는가 하는 것이 좀 세가지가 의심스러워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의 전문성 관계입니다.

헌법에 이런 31조 같은 조항이 있어가지고 교육의 전문성을 규정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냥 별다른 의미없이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정신에 전문성, 중립성, 독자성 이런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행정에서 분류를 시켜서 교육행정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교육 중에서도 또 교사의 전문성을 상당히 중시할 하는 것을 보면, 역시 그 교사의 사명, 교사가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즉 전문직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술자라든가 의사, 변호사, 법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기술자 할 것 같으려는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보입니다.

혹은 의사, 병든사람 고쳐주는 거죠.

혹은 법관도 역시 어떤 질서를 파괴한 사람을 교정을 시켜주는 방법, 뭐 이런 것인데 교사의 역할은 훨씬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 즉 사람을, 인간을 형성시킨다, 사람을 바르게 만들어 놓는다.

이것이 그야말로 법관이나 의사보다도 훨씬 앞서가는 그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야말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직업이 바로 교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는 웬만하면 된다.

누구라도 가르칠 수 있다, 학생은.

물론, 어느정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게 문제이겠습니까마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는 보통의 얘기들이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때, 좀 깊이 생각해 볼때 정말 저도 재자를 길러 봤습니다

마는 어떻게 학생을, 정말 인간형성을 만드느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때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교사가 아닌가.

교사가 잘만 가르쳐 놓으려는 의사도 필요 없고, 법관도 필요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때 교사가 가장 중요한 직업 중에서도 가장 신성하고 전문성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업이 교사가 아니냐.

이렇게 볼때, 그래서 헌법까지도 이런 규정을 해놓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볼때 그 중요한 교사의 전문성을 우리 교육행정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이러한 현실이 요사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교육행정은 교사의 전문성을 가장 앞서서 보장을 해주고, 또 이끌어 주고, 물론 교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한게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숫자도 많다보니까 제대로 참 연구한 교사가 희귀하고 그런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현실을 보다 바람직한 현실로 바꿔놓는 그런 작용, 그런 힘이 교육행정에서 우리나라라고 봐야 될 때 교육행정부터가 교사의 전문성을 가장 보호해주고 키워주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볼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피부로 느낍니다.

학교일선, 혹은 교육청 레벨에서 볼때 이 교사들 숫자도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조건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당차원 혹은 정치적인 오염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참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정당표는 백년대계까지도 안가지 않습니다.

어떤 권불십년이라고 해서 십년이 넘어가면 정권도 바뀌고 정당도 바뀌는데 그러한 정당차원에 간섭을 받고 해서는 교육이 제대로 교육으로서 사명을 다 할 수 없는거 아니냐.

교육은 적어도 의연하게 정당을 이끌어 가고 정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현재론 그렇지 못하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 교육청, 우리 다같은 교육가족으로서 어떻게 하면 교사의 전문성을 가장 보호해 주고 존중해 주느냐.

여기에 우리가 최대 힘을 기울여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사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교권을 인정받지 못할 때에는 그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정말로 학생들을 상대로해서 제대로 교육열을 발휘할 수 없는 그현상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모든 힘을 교사의

교권확립, 교사의 존중, 여기에 모든 힘을 기울여 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역설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은 교육가족끼리 교사를 위해서 모든 힘을 보태주자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장충호위원장님.

○ 장충호 위원 : 장충호위원장입니다.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박부교육감을 위시해서 국장님, 실·과장님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피로하시겠지만서도 끝으로 제가 질문 하나 하고, 또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벽지학교라 해서 등급을 쥐가지고 지금 현재 기준이 돼서 있는데, 이 제정된 것이 언제 제정된 것이며, 또 그것이 중간에 요즘 말하자면 시대의 변천과 교통수단의 발달 이런걸로 해서 변경이 개정됐다는지, 했다면 최근에 언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좀 알고싶고, 첫째 저희 단양같은데는 벽지학교로 지정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곳은 이치에 어긋나서 과거에 벽지이지만서도 오늘날에는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해가지고서 과거에 벽지아닌데 이상 못지 않게 편리한 곳도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끝으로 건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제가 두가지 질문서를 냈습시다마는,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식하고 공부들 덜한 점에서 그런 질문서를 내게 된 것입니다.

실제 일선 교육청에도 가서 물으니까 저에게 잘못 알려 줬어요.

그래서 질문서를 내게 됐는데, 내용을 보고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될 수 있으며는 농·어촌 학교에 형평을 유지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아주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는 사람도 적거니와 또 잘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역시 사람이 많이 살고 하기 때문에 부자도 있고, 독지가도 흔하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된 우리 교육청 예산 밖이라도 그러한 독지가라든지 간접 투자하실 분들을 발견하시며는 이 농·어촌 학교에도 좀 투자를 하도록 권유를 해서 간접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질문하기는 좀 뻣합니다마는, 저의 질문에 의해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장 근무지 상주에 관해서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상주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 군내에 거주하는 것은 상주하는 거로 간주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급적이며는 그렇게 잘 되도록 이렇게,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라기 보다는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의지라고 봐집니다.

그것을 그렇게 좀 해주시고, 거기에 의해서 사택을 짓고 있는데, 그 사택이 앞으로는 전교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은 그 연고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택이 필요 없는 교장선생님도 있으리라 봐집니다마는, 전부 지어준다고 볼적에 지금 현재 사택을 짓고 있는 것은 규모가 적어서 상당히 입주할 하지 않는 그런 교장도 있는 것 같고,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이 인사담당을 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초등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타 시·도는 안하고

있는데 우리 도만이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년전부터 이것을 시행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제가 들을적에는 일선 학교에 이런 얘기들이 분분하게 있기 때문에 문제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부교육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장 임기제에 의해서 4년, 4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건강이 나쁘다든가 또는 부득이 퇴임을 하여야 할 그런 교장에 한해서는 지금 명예퇴직 제도가 일반 교사에 한해서는 명예퇴직이 허용이 되는데 교장은 명예퇴직이 안되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건강이 나쁘다든가 조건이 나쁜 사람이 억지로 그런것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근무하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아마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안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길 소치가 있지 않겠는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신규 교육대학 졸업생들이 38명만이 신규 발령이 났다고 하는데

금년도 졸업생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 수급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가 옥천군에서 6명이 영동군으로 인사이동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초등국장님 말씀에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했노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근속이라고 해서 위에서 차례로 물리게끔, 이렇게 끊는것이 참말로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 점으로 봐서는 그 학교 군내에 근무성적이라든가 사고가 있는 교사라든가, 옛날에 우리들이 볼것 같으며는 군평이 나쁘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교사를 벽지로 보내고 또는 오지로 보내고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선생들을 타지로 보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운동선수선발 관계인데 박병해 위원님이 질문도 하셨고 이렇게 했습니다.

소년체전이 금년도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대구·광주·경기도 등지에서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질문한 요지는 무엇이나 할 것 같으면 구기종목 같은 단체선수가 필요한 것 이런것이 사실상 조그만 학교에서는 안되고 큰 학교에서 한팀 이렇게 선

발이 되는데 이게 뭐 솔직한 얘기가 도간에 경쟁이 되고 이래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야 할 뜻도 있는것 아닌가 봐져서 그 학교 말고 이웃 학교에 우수한 선수가 있다고 할 적에 그 선수도 발굴할 용의는 없는가, 그냥 그 한 학교에 있는 선수들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건가, 그것을 좀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관리국장님, 통학버스 운영 실태에 관해서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는것이 좋았노라고, 조그만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하는 것 하고, 또는 그 학생들을 큰 학교로 통학 할 적에 그 수업 관계라든가 여러가지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 운영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내다볼것 같으며는 버스가 지금은 48대인데 앞으로는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이 교통사고가 그 동안에 한 건도 없었는지,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교통사고가 제일 많다는 그러한 나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참 심사숙고하여 잘 운영을 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선생 그 문제좀 말씀 드릴까 합니다.

마침 옥천 안내중학교에 있다가 요번에 부강공고로 온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시다마는, 이 선생님이 전보 발령 받고서 옥천서는 상당한 화제가 됐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밤에 마음놓고 잠을 못자고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을 자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고지, 지금에 와서는 인사이동을 연고지 중심으로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인이 내신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런 다른 학교로 가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본인은 도저히 뜰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경식선생과 같은 이러한 불평을 하고 있는 선생이 사실상은 인사이동이 될 때마다, 비단 이 사람은 고충신청을 내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신문에 내고해서 문제가 되고 해서 문제가 됐습시다마는,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선생이 비단 그 강 선생 하나 뿐 만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모쪼록 인사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고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와 같이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또는 기타 선생님들을 연고지 우선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이런것을 신중을 기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일반 교사층에서도 본인은 내신을 안했는데 또 갑자기 인사 이동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청주로 내신을 했는데 옥천이나 영동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이런 것은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잘 인사당국에서는 충분히 고려도 하고, 개인의 실정도 봐가면서 하리라고 봐집니다마는 그래도 더 이것을 살펴 줘야지만이 되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자기 생활기반이 안정이 돼야지 교육도 마음놓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봐져서 이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시며는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대로 계속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상호협의중)

한 10분간 정회를 해드릴까요?

○ 부교육감 박동기 : 예, 그렇게 하죠.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그러면

보충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15시 49분)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그러면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에 의해서 관계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김광수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교장 임기제 시행에 따라서 명예퇴직제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강이나 기타 근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근무를 해서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면직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의원면직시킨 사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 칠성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을 의원면직을 시켰고, 증등도 미원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의원면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실기교사 임용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대학 졸업자가 본도에 응시해서 합격한 인원이 78명입니다.

이중에 오늘 현재 임용된 사람이 38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이 40명인데, 이 40명은 9월 1일자 8월말로 정년퇴직하는 교장, 교감, 교사 포함해서 29명이 있고, 명예퇴직 2명을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의원면직, 또는 사망에 의해서 여덟 사람을 보며는 9월 1일자에 전원이 임명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옥천군내에 장기근무한 선생님들이 정원 초과가 되기 때문에 영동으로 6명을 강제 전보시킨 데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강제로 전보시키기 전에 본인들이 옥천 관내에서 타 군으로 자진해서 전보희망자가 있으면 참말로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

불행히도 타 시·군으로 가고자 하는 선생님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도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제1항을 적용, 강제로 전보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있을 때에는 희망자가 있도록 유도도 해보고, 근평이나 다른 문제로 해서 장기근속자를 제외한 나태한 선생님을 전보하는 방법은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보충질문에 있어서 김광수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운동선수 선발에서 이웃학교와 합쳐서 혼선시키는 방법이 어떻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년체전 출전자격은 대회일로부터 1년 3개월전에 전입하도록 되어야 하고, 국민학교로 말씀 드리면 3-4학년에 전입이 되어야 하고, 또 개인경기는 7개 종목으로서 육상수영, 복싱, 레슬링, 역도, 태권도, 싸이클 거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혼선경기는 테니스나 정구등 해서 12개 종목인데 거기도 관계가 없구요.

다만, 단체경기인 단일경기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는 단일학교에서만 선수로 양성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학교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김사수위원님께서 학원에 재학생 수강 단속 여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셨는데,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년동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5개월만 수강을 허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군 교육청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일체 재학생들에 대한 학기 재학도중에는 수강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병해위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컴퓨터 지도 관계에 대해서 내실있는 방안으로서 지금 현재에 저희들 각 시·군 교육청에는 컴퓨터를 담당할 수 있는 파견교사를 각 시·군에 한분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시·군에 대한 센타로써 컴퓨터 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현재 컴퓨터에 대한 전문직을 각 시·군 교육청에 한명씩 전문직을 배치하도록 증원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도지정 연구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초·중·고 지정을 해서 좀 활성화를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항목으로 대두된 과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인상도 깊어지고 본인이 연수를 받고와서도 꾸준히 컴

퓨터에 광증이 걸리다시피 컴퓨터를 친구삼아서 매달려야만이 이게 발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국민정신교육, 도덕성 교육에 대해서 단재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거나 또는 교사 연수에 있어서는 프로테이지가 10% 내지 20% 책정이 돼서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마는 수련장, 야영장에서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다시 연구·검토를 해서 이것도 도덕성 교육에 프로테이지를 가산을 해서 강의 시간에 넣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인 1운동 전개 권장은 이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중간체조 시간이나 방과후나 학생들에게 뭔가 한가지는 초·중·고 12년동안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시기에 있어서 참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학교에서 사실상 중간체조에서도 곤봉놀이를 한다든지 또는 줄넘기를 한다든지 이런것을 하고 있는 학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개증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

그 다음에는 권혁풍위원님께서 수학능력 평가에 대한 탈교과서적, 통합교과, 초학년 적인 그 언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교과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입시제도에 있어서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끔 이렇게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교과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를 내지 않고 교과서 밖에 것이나 또는 교과서의 내용과 달리 출제를 한다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통합 교과적"이라고 하는 말은 전 교과에서 예를 들어서 언어능력을 테스트 한다고 할 것 같으려는 국어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작문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음악도 들어가고, 미술도 들어가고, 사회도 들어가고, 과학도 들어가고, 도덕도 들어가고 한다고 하는 그런 전 교과에서 언어능력이나 수리 탐구 능력을 테스트 한다, 이렇게 출제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초학년적"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3학년에서 배운 교과가 70%, 2학년에서 20%, 1학년에서 배운 교과가 10% 이렇게 프토테이지가 책정이 돼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 출제를 하도록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

니다마는, "초학년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비율이 없이 1학년, 2학년, 3학년 그 과정 전체를 묶어서 임의로 언어수용, 탐구 능력, 외국어능력으로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서적 도덕성 또 행동평가도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의한 문제출제가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참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만, 실제 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참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시도하여 연구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더 많은 것을 연구를 해서 저희들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니 만큼 참 부끄럽지 않고, 훌륭하다고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연구원하고 협력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 보충질문에 대한 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충호위원님께서 "도서 벽지학교의 등급 지정은 언제 됐으며, 최근 조정은 언제 하

였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 드리려는 도서벽지에 의무교육 지원을 위해서 정부입법으로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정이 1927년도에 됐습니다.

그 당시 처음으로 도서벽지 학교에 등급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1981년과 1990년 말에 2회에 걸쳐서 개정이 돼서 등급이 조정돼 왔습니다.

등급을 조정하는 기준은 내부부하고 총무처 교육부 이 3개부처에서 협의를 거쳐서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거기 체크리스트를 가져와서 점수화 시킵니다.

대충 기준을 보며는, 그 도로에서의 도로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또 인근 학교는 어떻게 돼 있는가.

또 버스운행 회수는 몇번이 되는가.

또 산지 면적의 비율은 어떤가.

또 군청 소재지와 의 거리라든지, 전화보급 비율이라든지 하는 것을 체크리스트로 해서 이것을 점수화 시켜서 3개부처 합동으로 조정을 하고 또 법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급격한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당시 지정한 상황과 현재 상황은 수시로 달라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아마 3개부처가 합동으로 가까

운 시일내에 등급 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광수부의장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학교 통·폐합에 따른 버스운행상에 교통사고가 없었느냐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앞으로 교통사고 없도록 철저히 예방에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운전자나 승차하는 학생들에게 철저한 안전운행과 안전지도를 실시해가고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수부의장님께서 그 "각급 학교에 사택이 전부 보급되도록 하고, 또 규모를 확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도 관내에서 청주·충주·제천시 지역과 청원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각급 학교에 사택은 나름대로 전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며는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지역에도 사택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 확대에 있어서는 저희들 교육재정이 열악한 관계상 교육부에서 내시하고 있는 기준은 유감스럽게도 천7백만원 뿐

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본도에서는 여기에 약간 좀 보태서 2천3백만원을 이렇게 사택동당 기준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별로 자체 재원이 허용한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좀 보태가지고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사택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고등학교에서는 사택을 처음 지으려고 하다가 아파트를 사겠다, 아파트를 사는데 예산을 전용을 해달라.

그리고 아파트를 사려고 하려는 예산을 더 보태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했더니 교장선생님 말씀이 동창회에서 협조를 얻겠다.

이왕 사택을 마련하는데 그 교육청 예산이 어렵다고 하려는 동창회 협조를 얻어서 규모라도 좀 확대해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천3백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영등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천3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규모를 한 20여평짜리 아파트로 이렇게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부교육감 박동기 : 부교육감 박동기입니다.

김광수부의장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각시·군 교육청에 일반직 인사담당자를 배치하므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사실 일반직을 배치한 것은 전 유성종 교육감님께서 전국적으로 처음 특색있게 시도하는 하나의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시다시피 지역교육청에 전문직 수가 적고, 또 업무가 상당히 폭주되고 전문성을 제고할 이런 시간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를 돕기 위해서 인사보조자로서 배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직이 흡사 인사를 전담하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이런것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일부 교육청에서 얘기가 오고가고 하는 이런 사례도 없잖아 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초등·중등계의 상·하에 배치를 해서 순수하게 인사보조하는데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된 인원은 6급이 하나고, 기능직 하나, 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치되므로써 우리 장학직 전문직에 대한 업무 경감에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장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수학능력 고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위원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셨고 또 우리 중등국장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입시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곤욕을 한번 치러야만이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려서 '94학년도에 대학학력 고사가 개선이 되는 이런 맥락을 해서 중학교에 적용된다고 하는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200점 만점에 20점은 체력검사로 180점을 기준으로 해서 언어영역에 80점을 배점을 하고 수리에 25점, 탐구영역에 50점, 영어에 25점 180점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수리하고 영어에 배점을 적게 한 그 뜻은 여러위원들께서 항시 노파심에서 걱정하고 계신 그 내용이 영·수 학원이라고 하는 또는 영·수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는 이런 경향을 막기 위해서 이 배점을 줄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언어영역이나 수리탐구영역이 비단 언어라고 하는 용어

개념을 가지고 이거 국어·한문만 된다고 하는 이런 관념을 버리기 위해서 국어는 물론이지마는 사회·과학·실과·음악·미술 전 교과에 의해서 언어가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므로써 읽을 수가 있고, 봄으로써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 교과를 다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는 작년에 이걸 개발하기 위한 연구위원을 60명 위촉을 해서 시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그 연구위원을 위촉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교과이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 그대로 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역시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며는 그 지식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다 평가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기른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것을 다시 부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의장님께서 강경식선생 말씀이 계셨는데 잠깐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고지로 배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리하게 인사됐다고 하는 사항은 금년도에는 없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강선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화공과를 설치한 학교가 세학교가 있습니다.

부장공고, 보은농공고, 단양공고 이 세군데에 화공과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중학교 인문고등학교에 화공과가 배치되어 있는 수가 몇명 안됩니다.

그런데 화공과 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중학교에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그 공고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 배치된 사람중 한 사람이 바로 강경식 선생님이십니다.

그 뿐만 한 것이 아니라, 단양공고에도 단양에서 발탁을 해서 단양공고에다 배치를 했고, 보은농공고는 보덕중학교에서 그러한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발탁해서 보은농공고에다 배치를 했고, 또 이 강선생님은 육천 안내중학교에 계신 분인데 부장공고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 인사는 불리한 인사라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를 않고, 또 수급 조절상 도리가 없기 때문에 발탁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서는 영전입니다, 발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자기 의사대로 발령이 안났다고 하는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고충심사위원회에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고충심사위원회를 할 때에 본인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얘기가 됐고, 또 본인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갔다고 하는 것을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수고하셨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제가 조금 더 질문좀 해도 될까요?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아니 글썄요. 지금까지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보편적으로 대체적으로 원만한 질문에 원만한 답변이 되셨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만부득이 꼭 "이런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추가 질문이라고 할까요, 또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원님이 계신다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세요?

○ 권혁풍 위원 : 말씀드려도 될까요.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 권혁풍 위원 : 죄송합니다.

수학능력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 참 말씀이 되는데, 수차에 걸친 답변을 들어서 듣기전에도 제가 취지라든지 내용을 몰라서 묻는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뭐가 문제냐, 현장에서 상당히 이것을 풀까 두려워 한다고 할까, 처음 실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왜그러냐 하려는 즉, 입시제도가 그렇

게 바뀌며는 학교에서 평상시 시험도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즉 시험방법 입시제도 방법은 통합식, 탈교과식, 초교과식 이렇게 하는데 과연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 태도가 되어 있는나.

즉,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교과 즉 사회하면 국사·도덕·일반사회 이것이 통합교과로서 교재가 아직 나와있지 않은걸로 제가 알고 있고, 과학·생물·물리·지학이 형식적인 통합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물론 그렇게 교재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수업 내용에 있어서 수업 할 때 통합식으로 물론 할 수도 있는걸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직까지도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처럼 그러한 분과식 시험을 현장에서는 하면서 입시제도는 통합식으로 한다 할때 여기에서 혼란이 오는게 아니냐 그것이 문제이고, 또 아까도 초학년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1학년에서 몇 %, 2학년 몇 %, 3학년 몇 %, 뭐 그것을 단순히 그런 뜻이라기 보다는 좀더 좀 깊이 영재교육 차원에서 월반도 시킬 수 있고, 혹은 부족한 학생은 낙제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대학에서 학점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의문이 그렇게 두가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흡족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안돼서 다시 드리게 될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장과 항상 연결시켜 볼 때 현장에는 그런 준비가 안된 상태인데 그냥 입시만 그렇게 하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권위원님 어떻게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 권혁풍 위원 : 물론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 권혁풍 위원 : 잠깐 좀 들었으면,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인가.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그러며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권혁풍위원님께서 또 추가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현재 수학능력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가 돼 있습니다.

즉,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만 운영이 된다고 하며는 그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준비가 필요 없는걸로 봅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전인교육 차원에서 현재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학교에서 13가지 과목이 정상적으로만 이루어 진다고 하려는 수학능력 테스트에는 큰 문제가 없는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도의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고심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이 돼서 앞으로 계속 이루어 저서 2-3년만 이것이 정착이 된다고 하려는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정상화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중학교에는 월반제나 또는 낙제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교육차원에서 낙제를 시킬 수는 없는 실정이고, 또 학교내에서 월반을 시킨다든지 했을 적에 모 학자가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고등학교때 월반하고 보니까 나중에 성인이 돼서 상당히 기초학력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월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도 본 적이 있고해서 제 생각도 적어도 중학교 과정에서는 정상적으로 기초학력만 받아주면 그것을 이용해서 응용력·사고력·추리력 이런 것을 기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답변 말씀을 올립니다.

○ 권혁풍 위원 :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기말 시험같은 것 볼 때에는 어떤 종전 그 대로가 유지될 것 같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과목별로 돼나지요?

○ 권혁풍 위원 : 또 이견 또.....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래야 평가가 나오죠.

○ 권혁풍 위원 :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 세가지만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통합교과라고 하는 것이 전 교과에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 김응복 위원 : 키포인트는 이런 문제구성인 것 같아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렇죠. 그게 구성문제죠.

○ 김응복 위원 : 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문제인거 같아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현재 학교에는 현재대로 과목별로 지도를 해나가야죠. 기본 능력을.

○ 권혁풍 위원 : 지금 대학입시를 준비해서 지금 수학능력 평가를 바꾸듯이 고등

학교 입시 제도를 바꾸면 학교 현장에서도 또 따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갈 때 거기에 대한 준비도 없이 따라간다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으나 그것입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물론 그런 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만 운영하도록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준비를, 고등학교 입시 준비라는 것을.....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국장님,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과정을 없애자 이겁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새로 도입되는 그러한 과제이기 때문에 보다도 더 심사숙고해서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다른위원들 질문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문이 없으시며는 이것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동안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질문·답변 이 과정에서 나온 이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집행기관에서 더 보완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이것이 보다도 더 유익한 교육행정의 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간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8일, 29일은 휴회를 하도록 하고 30일은 11시에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직속기관 방문계획이 있으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용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7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신태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총무과장 이근수,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엄갑도
재무과장 고일영, 시설과장 박성근.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2년 3월 30일 (월요일) 11시 22분

의 사 일 정(제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의안의결

- 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 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다.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안)

부 의 된 안 건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3.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안)

(11시 22분 개의)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세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신 후에 의결을

하시는데 절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상일위원님이 오늘 불참계를 내시고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24분)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 의장 김영세 :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질의 있으십니까?

(홍신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홍신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홍신희 위원 : 지금 이 조례안 제5조를 보면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그 입법 기술상의 문제로서, 조례에다가 이 규칙으로 정할 것 없이 완전히 조례에다가 포함시켜서 제정하는 방법도 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위원회 규칙의 문제는 또 집행청의 어떤 그 규칙의 문제와도 이게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소의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 해서 이 문제는 일단 좀 연구해서 이 전체를 조례에다가 총괄적으로 규정을 하느냐,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하는 과제로 두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지금 홍신희위원께서 발의한 요지는 우리 직제 5조에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직제표를 조례안 본문에다가 삽입하는 방안도 있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에 표결을 연기하자는 이런 제안입니다.

또 다른 의견,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께서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제가 본 조례 발의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22조 4항을 보려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인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을 임명하는 임명권은 교육감한테 있습니다만 협의권은 어디까지나 의장한테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임명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의장과 협의해서만이 임명할 수 있다고 볼 때, 의장한테 협의를 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 즉,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할 때 교육규칙을 미리, 이런 그 의장의 협의 대상이 되었을 때 기준을 미리 정해 놓자, 그 규칙을 정해 놓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지방교육자치법 22조 4항과도 정신이 하나도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타도의 의견도 있고 우리 본도 의회 의견도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모

두 다 생각을 하게 되며는 우리의 독자성은 완전히 상실되고 맙니다.

어디까지나 지방교육자치 본질이 우리의 독자성과 자주성입니다.

그럴때 남의 눈치 볼 필요없이 우리의 독자성을 살려서 그대로 제가 발의한 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제안자와 또 홍신회위원의 질의에 다 같이 내용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찬·반토론 이전에 우리 의사조정을 위해서 일단 잠시 휴회를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선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은 약 5분간 되겠습니다.

(11시 28분)

(11시 38분)

○ 의장 김영세 :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이재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 저는 권혁중위원의 발

의에 찬성을 하면서 제3조에 자구수정을 하는 수정동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례도 하나의 법인체 현재 이 우리가 정수에관한조례안 이 5개 조항만 보며는 제1항이 목적, 제2항이 직무, 제3항이 조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이 "의사국에 의사국장을 두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이 항이 "의사국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교육위원회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의 내용이 3항은 의사국장의 임무이지 조직에는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1항을 "의사국에 의사국장과 직원을 둔다." 하고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야 이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이따가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동의를 정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신회위원 거수로 질의 신청)

예, 홍신회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홍신회 위원 : 아까 그 질의사항중에 말씀을 드렸습시다라는 문제가 되어 있는 제5조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느냐, 교육 규칙으로 정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느냐, 교육청의 규칙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다소에 어떤 그 합리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아예 이 조례안에다가 규칙에 포함될 사항을 전부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자면은 우리가 조례에 대한 그 연구를 하기 위한 소위원회라도 하나 별도로 다음 회기에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좀 더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이 조례안을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이번 회기에서 다음 회기로다가 유보시켜 넘기면서 이런 조직을 통해서 좀 더 검토·연구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또 다른 반대로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침묵)

반대로론은 그럼 종결하고, 찬성토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발의자로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신회위원님 좀 유보하자는 안, 좀 신중을 기하자는 말씀 중습시다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규칙을 집행청에서 정하느냐 아니며는 교육위원회에서 정하느냐 이것이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보를 해서 만약 우리가 규칙 제정권을 교육감에게 넘겨주지 않는 이상, 가장 핵심 사항인, 넘겨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규칙 제정권을 갖고 있으려면 지금 통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또, 다른 수정의견 있습니까?

김응복위원님.

(김응복위원 손을 흔들어 수정의견 없음을 표시)

이재희위원님 수정의견 있습니까?

○ 이재희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예.

○ 이재희 위원 : 의사과장님도 뭐 설명을 좀 해서 "이게 보통 관행으로 되어있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저는 제3조 조직이라고 나와 있으면 "의사국에 의사국장과 직

원을 둔다"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게 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위원장 침묵)

동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되겠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이제 그 제3조에 "조직은 의사국에 의사국장을 두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항에 "의사국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것은 지금 저 이재희위원 얘기는 2항은 하나의 "의사국장의 임무"에 들어 간다, 이런 말씀이 되시는 것이지요.

○ 이재희 위원 : 예, 임무에 해당이 되고, 이 타이틀하고 그 소재내용이 일치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조직" 해 놓았으니까, 의사국에 1항을 "의사국에 의사국장과 직원을 둔다." 하면서 조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항에는 이제 의사국장의 임무로 써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잠시 교육위원간 서로 대답 : 정취불능)

○ 의장 김영세 : 예, 지금 이재희위원의 이 수정동의안은, 그 원안은 관행에 의해서 도의회 규칙이나 조례를 참고로 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3인의 위원이 동의가 있으시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3인의 위원이 찬성있으십니까?

(위원장 침묵)

지금 찬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며는 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지금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우선 반대토론에 찬성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면 거수로써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교육위원 2명 거수 표명)

예, 두분 나왔어요.

의사록에 기재하세요.

원안대로 오늘 통과시키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교육위원 7명 거수 표명)

일곱분에 의장까지 여덟.

그럼 본 안건은 8대 2로 해서 여덟분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박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병해 위원 : 여기 증가율하고, 대부분 인상율하고 상세히 나와 있는데, 지방에 따라서 많이 차이도 있을 걸로 알고, 또 그 대상물에 따라서도 여러가지가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걸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어서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며는 어느 지방에 어느 토지같은 경우, 그 반대로 또 어느 토지에 어느 지방 같은 것은 얼마였던 것이 얼마로 올라가는데 얼마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 의장 김영세 : 박병해위원 그거 한가지입니까?

○ 박병해 위원 : 그리고 이 7페이지에 보며는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분을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

산",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따로"라고 하는 이 내용은 대개 뭐를 말하는 건지 이렇게 두가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 재무과장 고일영 : 재무과장 고일영입니다.

지금 박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 필지를 전부 공시지가 인상된 것을 적용해서 인상된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일일이 다 따져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임대계약을 한 것이 392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가 대폭인상으로 인해서 그 변동을 시켜야될 사항이 179건에 저희들이 임대료 받은 것이 6천1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79건은 평균적으로 따져서 약한 57%가 작년보다 더 인상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반환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약 한 천500만원정도 반환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부를 다 179건을 말씀드릴 수

없고, 대표적인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 구내식당이 '91년도 사용료가 224만9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329만6천800원입니다.

증가율이 47%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환을 하게 되며는 69만4천700원 반환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중학교 구내식당은 '91년도 70만9천원이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158만원입니다.

이것은 12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3만9천원 반환요인이 생겼습니다

또, 그 충주에 한군데를 말씀드리면 충주고등학교 구내식당은 '91년도에 181만원이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229만원입니다.

이것은 2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3만4천400원을 반환을 할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천지방에 제천고등학교 구내식당은 '91년도 97만원이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125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2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양지방에 단양고등학교 구내식당은 176만3천원이 '91년도 사용료이었는데 '92년도에는 200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1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음성지방에는 음성고등학교 구내식당으로서 '91년도에 119만원이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6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옥천지방에 옥천고등학교 구내식당은 48만원이었습니다마는 91만8천원으로 91%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일곱 건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평균하면 57%, 그리고 이 일곱 건에 대한 그 반환해야될 해당액은 282만9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 3항 5호에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료율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재산, 또는 토속채취료, 그 공용목적의 공무원 후생복지용이라든지 하는 주택, 그리고 기타 위 4개항에 해당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답변되었습니다.

○ 박병해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예, 또 따로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권혁풍위원님.

○ 권혁풍 위원 : 예, 답변을 듣자하니

까, 반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 사용료 부담금이 어느 정도까지 증가해야 되겠다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저희가 이 '91도에 그 임대계약을 받아내기도 하고 금년에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계약한 것하고 대략 몇 %가 증액이 됐나, 하는 것을 따져 본겁니다.

○ 권혁풍 위원 : 글썄요, 저 57%가 평균액씩 올라갔다 했는데 그러면 그걸 반환해야지 될 의무가 있는거죠?

○ 재무과장 고일영 : 저희 조례가 확정·시행될 것 같으려는 반환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인 도청은 1월 31일 날 이미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가 다 아마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환요구를 하면서 반환을 바로 해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권혁풍 위원 : 그래 이 조례가 확정·이 됐을 때 얘기겠죠?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 의장 김영세 : 어떻게 권혁풍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 권혁풍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부의장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지금 시·군단위로 학교 구내식당에 그 몇 %, 몇 %, 많이 오른데도 있고, 적게 오른데도 있고 이런데요.

이것이 당초에 산출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만큼 올라갔다, 이런건데 그러면서 어떤데는 많이 올라가고 어떤데는 덜올라가고 이렇게 되었던 말이지요.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 부의장 김광수 : 그런데 이게 장사가 잘되는 데는 그 매점이나, 식당이 잘되는 데는 그게 더 올라가게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장사가 안되고 하는데는 그게 운영이 안되니까, 또 좀 못받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생길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올라갔다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고일영 : 저희 지금 조례에 보려는 아주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천분지 50을 적용한다."

○ 부의장 김광수 : 그러면 장사가 잘되도, 안되도 상관없이.....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저희는 지금 그 영업이 잘되고, 안되고 까지는 감안을 못하고 저희 이 조례에 정해진 대로 공시지

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임대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위원장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위원장 침묵)

반대토론 없으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 권혁풍 위원 : 증가율에 따른 대부료 인상율이 주욱 나와 있는데요.

증가율이 10내지 20% 일때는 대부료도 10내지 13%가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57%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향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 좀 설득력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됐는지, 타도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어떤 물가지수가 그렇게 돼서 그런지, 그걸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질의·답변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것을 보충질의로 해서 접수할까요?

어떻게.....

(위원님들 침묵)

질의·답변은 종결했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예, 그러면.....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나중에 사적으로 권위원회에서 그걸 좀 보완해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시지요.

○ 권혁풍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예, 그러며는 반대토론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며는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3.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 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

항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박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병해 위원 : 여기 5페이지에 보며는 물품명하고, 정수하고, 현보유수하고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현보유수, 정수 이것은 여기나와 있는 숫자는 이제 도 전체 계죠?

(집행기관석에서 재무과장 답변)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그렇습니다.

○ 박병해 위원 : 이게 그렇다고 그러며는 이걸 물품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보유수가 정수보다 많은 것을 해아려 보니까, 5종 밖에는 안나와요.

그외 것은 전부가 다 미달인데 그 미달수에 대한 보완관계는 계획이 어떠한 건지,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김영세 :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 재무과장 고일영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수의 정의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직의 임무와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해가지고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소모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정한 것이 정수입니다.

그리고 정수 제도의 목적은 그 조직의 사업수행, 또는 행정에 필요한 주요장비의 수를 미리 정해 놓고, 그리고 그 범위안에서 취득, 사용케 함으로써 과소 보유로 인한 업무에 지장을 없게 하고,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게 되어 있고,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선정은 교육부장관이 해서 이 내용년수하고 품목을 정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수를 책정할 때에는 이미 T·O가 배정되어 있는 것은 배정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구설비기준령에 나와 있는 것은 교구설비기준령에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그 정수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 요청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이 체육고나, 과학고등학교, 또 인문계에 지역과정 운영학급이 있는데는 그 실정을 감안해서 정수를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정수에 미달되는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확보해야 될 것이 46개 품목에 3,191점, 12억7천700만원 어치

를 취득을 하고, 처분은 44품목에 2천206점을 취득하는데 6억5천4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수보다 현 보유수가 적은 것은 일시에 다 보충을 해서 채워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점차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병해 위원 : 일시에 이걸 다 보충하려면 막대한 돈이드는건 분명한 애긴데, 초등이나, 중등국장님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 숫자는 능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이것에 비례하여 교육력이 절감되는 건 뭐 아주 분명한 애기니까, 이거 참 하루 속히 재정보호를 해서 확보하는, 물자확보가 아주 시급하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박병해위원 요구사항을, 요망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김응복위원 거수로 질의 신청)

예, 김응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응복 위원 : 취득에 대해서는 대개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이 처분에 대해서 그 절차라든가, 또 기술적인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납니다.

처분은 아주 폐기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쓸만해서 또 매각하는 면도 있겠고, 또 이걸 폐기해서 처분하는데는 무슨 절차라든

가, 기술상 문제가 수반돼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하는 것은 처분사유가 거개가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또는 오래 사용을 해가지고서 노후돼서 쓸 수 없는 물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분도 기관에서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승인을 받아서 처분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쓸만한 것을 처분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승인할 때에는 충분히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응복 위원 : 기술적인 면에서 어떻게 뭐 검토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 재무과장 고일영 : 저희들이 그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물건은 아직 경험한바가 없습니다마는 아마 기계 관계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에 그 값비싼 물건을 처분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학교에서 내용연수가 또 있기 때문에 5년내지는 10년, 이렇게 보통 쓰고있는데 못 써서 폐기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의장 김영세 :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사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김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사수 위원 : 이 취득보다도 이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으로 하는데 이 물건은 가격산정이 적기 때문에 소홀이 다루기가 쉽습니다.

특히 처분에 있어서 가격산정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취득도 가격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지금 취득하는데 있어서 가격은 예산에 계상돼 있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에 있어서 이 금액은 대장가격입니다.

즉, 이 취득가격입니다.

○ 김사수 위원 : 결국 다른 기관에 뭐 감정한 가격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 김사수 위원 : 취득가격.....

예, 알았습니다.

장부가격이겠죠?

○ 부의장 김광수 : 매년 감가상각하고

해서 남은 장부가격,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 재무과장 고일영 : 그런데 저희는 이 감가상각을 안하고, 구입을 하게 되면서 취득 당시에 얼마에 샀다, 하는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구입할 때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사수 위원 : 아니 몇 년 썼는데 취득할 때 값을 처분할 때 받을 수가 있어요?

○ 재무과장 고일영 : 그런데 저희가 처분계획에 나와있는 물품은 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사수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또 다른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까.

반대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위원들 침묵)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침묵)

예,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없고,
다른 이의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충청북
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
분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금번 임시회도 어느 임시회에 못지 않게
알차고 내실있는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됩니
다.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질문·답변을 통하
여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이
보다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 주시기 바라고, 의사국 직제 조례를 제
정함으로써, 앞으로 교육위원회 사무처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제8회 충청북도교육
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
회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3분 폐회)

○ 출석위원 : 10명(이상일위원 불참)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7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
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신태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행정관리담
당관 정현동, 총무과장 이근수,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엄갑도, 재무과장 고일영
시설과장 박성근.

議 事 日 程(案)

第 8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1992. 3. 26 - 3. 30(5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3. 26(목) 14:00 14:15	※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안) 상정 및 제안설명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상정 및 제안설명 4.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 물품취득및처분(안) 상정 및 제안설명 5. 교육행정(전반)에 관한 질문 (제1차 본회의 산회)	회 기 3. 26 - 3. 30. (5일간)
3. 27(금) 10:00	(제2차 본회의 개의) 1. 교육행정(전반)에 관한 질문(계속) (제2차 본회의 산회)	
3. 28(토) 3. 29(일)	휴 회	※ 직속기관 방문 - 교육연구원 - 학생회관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3. 30(월) 11:00	(제3차 본회의 개의) (의안 의결)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3.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 물품취득및처분(안) (제3차 본회의 산회) ※ 폐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
----------	---

발의년월일 1992년 3월 일

발 의 자 권 혁 풍 교육위원(인)

외 3인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의 개정(1991.12.31 법률 제4347호)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사국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함.

2. 주요골자

- 의사국의 직무(안 제2조)
- 의사국의 조직 및 의사국장의 직급(안 제3조)
 - 의사국장 직급(지방서기관)
- 사무직원의 정수(안 제4조)
 - 지방공무원 17명
- 조례 시행에 따른 교육위원회 규칙 제정(안 제5조)

3. 참고법령(별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이하 "의사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직무) 의사국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와 운영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 3 조(조직) ① 의사국에 의사국장을 두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사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4 조(사무직원의 정수)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7명으로 하며, 그 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 5 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표

직 급 별	정 수	비 고
합 계	17	
○ 일반직 계	8	
지 방 서 기 관	1	
지 방 행정 사무 관	3	
지 방 행정 주 사	2	
지 방 행정 주 사 보	2	
○ 별 정 직 계	4	
전 문 위 원(5급 상당)	2	
속 기 요 원(8급 상당)	2	
○ 기 능 직 계	5	
지 방 사 무 보 조 원(10등급)	3	
지 방 운 전 원(10등급)	2	

(참 고 법 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 22 조(의사국의 설치등) ① 교육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사국을 두고, 의사국에는 의사국장과 직원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국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 ④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
----------	---

제출년월일 : 1992. 3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 정 이 유

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가격을 산정함에 따라 일부지역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로인한 사용자의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향 조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변상금 포함)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부료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함.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 10 - 20 %	10 - 13 %
○ 20 - 50 %	13 - 16 %
○ 50 - 100%	16 - 19 %
○ 100- 200%	19 - 22 %
○ 200- 500%	22 - 25 %
○ 500 % 이상	25 % 이상

나. 대부료 산정은 '90. 11. 10. 이후의 대부료 결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개 정 근 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3항 (대부료를 또는 사용료를)
- 교육부 교재 22400 - 19 (92.1.25.), 공유재산대부료조정을위한조례개정준칙

4. 조 례 안 : 별첨

5. 기 타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예산상황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 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 %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 이상 20% 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 이상 50% 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 이상 100% 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 이상 200% 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 이상 500% 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 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할 수 있다.

신 :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료율) ①(현행과 같음) ----- ② ----- ----- ③ ----- ----- ④ ----- ----- ⑤ ----- -----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료율) ①(현행과 같음) ----- ② ----- ----- ③ ----- ----- ④ ----- ----- ⑤ ----- -----	
(신 설)		제23조의 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 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 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변 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 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이상 20%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이상 50%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이상 100%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이상 200%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이상 500%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현행	개정
	부칙 <u>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대한 적용례)</u> <u>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 다.)의 결정에 적용할 수 있다.</u>

참 고 자 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 관련서류

0 관계법령(부분발췌서)

0 조례개정준칙

0 지방재정법시행령 (1990. 11. 6. 대통령령 제13156호)

제 92조 제3항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경작목적의 농경지
2. 목축, 광업, 채석 목적의 재산
3.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4. 청사의 구내 재산
5.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료율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교 육 부

110 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전화 (720-3317)

전송 (736 3402)

문서번호 교재 22400-19

시행일자 1992. 1. 25.

(경유)

수 신 수신처참조

첨 조

선결	부속	지	
점	일자 시간	92. 1. 25	
수	번호	211	
처리과	재무과	재무과장	
담당자		재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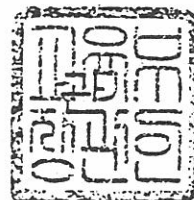
제 목 공유재산 대부로 조정을 위한 조례준칙 시달

공유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1990.11.6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지역의 공유재산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용료의 산출액이 전년도 사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조례 개정 준칙을 시달하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등 개정준칙 1부. 끝

교 육 부 장

보통교육국장전결



수 신 처 : 다01-18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준칙

○ ○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 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가율	대부료 인상율
10%이상 20%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이상 50%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이상 100%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이상 200%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2$
200%이상 500%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할 수 있다.

※ 참고 ※

신설조문은 기존 조례의 "대부료 및 사용요율" 조문 다음에 신설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및 처분안

의안
번호

3

제출년월일 1992. 3.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정수관리 대상물품중 학생교육 및 교육행정에 필요한 물품의 취득과 내용연수경과및 노후화된 물품을 처분하여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정수관리 대상물품중 통폐합학교 학생의 등하교에 필요한 버스와 각종 학생교육에 소요되는 실험실습 기자재및 교육행정용품 46개품목 3,191개 물품을 취득하고자 함.
- 나. 장기간 사용하여 노후화된 차량과 실험실습 기자재등 44개품목 2,206개 물품을 처분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가. 지방제정법 제95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 나. 지방제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4.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및 처분안 : 별 첨

5. 기타 참고사항 : 별 첨

가. 관계법령 발췌서

나. 정수관리 대상물품 목록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및 처분안

가.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품목	수량	금액	비고
취득	46	3,191	1,277,500	
처분	44	2,206	654,896	

나. 품목별 내역

금액 : 단위/천원

일련 번호	품명	정수	현보유	취득			처분		
				수량	금액	취득사유	수량	금액	처분사유
1	중형승용차	19	17	5	43,900	교육행정추진및업무용	3	20,137	내용연수경과
2	소형승용차	69	69	1	8,300	"	1	4,050	"
3	대형승합차	18	15	3	87,000	학생등하교수송			
4	중형승합차	42	32	10	148,781	"			
5	중형화물차	3	3	2	15,306	농고농산물수송및학습용	2	12,511	내용연수경과
6	자전거	966	396	68	6,047	교육행정업무추진용	80	8,150	내용연수경과및노후화
7	모터싸이클 (90CC 이하)	478	27	5	3,970	"	3	1,163	"
8	모터싸이클 (90-250CC)	14	9	1	600	"	1	587	"
9	운전등사기 수동	483	204	1	17	학생교육용	47	16,921	"
10	운전등사기 전동	1,185	512	12	27,590	"	43	47,732	"
11	제판기운전등 사기용	1,219	377	6	15,079	"	26	35,306	"

일련 번호	품 명	정 수	현보유	취 득		취득사유	처 분		처분사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12	재판기오프셋 인쇄기용	474	17	1	1,760	학생교육용	4	5,380	내용연수경 과및노후화
13	오프셋인쇄기	437	31	5	23,700	"	6	15,345	"
14	전자복사기	1,231	1,058	17	54,890	"	103	210,192	"
15	제단기,종이	426	75	6	1,156	"	6	236	"
16	냉 장 고	1,099	588	64	26,256	"	12	4,419	"
17	방독면특수	2,304	561	87	2,823	학생교육용 및 훈련용			
18	방독면일반	18,506	3,228	1,345	22,280	"	46	547	내용연수경 과및노후화
19	온풍난방기	1,160	307	16	18,774	학교교육추 진업무용			
20	전화기,키편	702	322	23	4,450	학교교육추 진업무용	7	232	내용연수경 과및노후화
21	모사전송기	514	494	7	14,228	"	6	17,297	"
22	카메라,TV	456	83	17	18,023	학생교육용	4	2,282	"
23	녹 음 기	997	786	25	2,579	"	47	3,422	"
24	녹음기(VTR)	1,904	1,835	11	7,950	"	36	19,984	"
25	오실로스코프	1,093	192	21	14,992	"			
26	건 조 기	908	114	5	1,185	"	2	255	내용연수경 과및노후화
27	원심분리기	1,035	139	4	1,254	"	2	21	"
28	투 영 기	637	129	1	130	"	11	453	"
29	현 미 경	16,522	11,174	251	45,749	"	326	18,201	"
30	청 사 진 기	26	18	1	300	"	1	1,706	"
31	동사진카메라	447	188	11	6,575	"	3	183	"
32	정사진카메라	998	657	26	7,448	"	38	6,919	"
33	영 사 기	453	176	2	3,500	"	13	4,695	"
34	환 등 기	837	1,028			"	60	9,157	"

일련 번호	품 명	정 수	현보유	취 득			처 분		
				수량	금 액	취득사유	수량	금 액	처분사유
35	투 영 기 (OPH)	1,212	765	15	4,400	학생교육용	24	3,055	내용연수경과및노후화
36	금 고	504	140	2	240	"	6	57	"
37	세 탁 기	488	24	7	3,284	"	1	50	"
38	천 공 기 (컴퓨터용)	395	1	1	600	"			
39	전자계산기	3,210	1,514	199	12,012	"	62	2,425	내용연수경과및노후화
40	타자기수동	1,881	2,387			"	289	40,280	"
41	타자기전동	1,329	201	8	4,258	"	2	898	"
42	타자기전자	1,541	672	63	29,898	"	1	770	"
43	워드프로세서	878	228	53	61,806	학생교육용	4	13,126	내용연수경과및노후화
44	프 린 터	1,892	652	144	142,875	"	10	2,929	"
45	컴퓨터 8비트		3,419				390	81,814	내용연수경과및노후화 장비신형교체
46	컴퓨터16비트	11,081	4,983	587	338,044	학생교육용	43	16,269	내용연수경과및노후화
47	컴퓨터32비트	48	24	11	34,100	"			
48	모 니 터	925	2,134			"	82	4,561	내용연수경과및노후화
49	문서새단기	408	10	3	370	"			
50	카세트라디오	1,104	7,475			"	224	13,292	내용연수경과및노후화
51	탁 구 대	1,516	708	38	9,021	"	56	4,573	"
52	펄 린	1,939	1,994			"	73	3,314	"
	소 계			836	586,216		882	139,878	
	총 계			3,191	1,277,500		2,206	654,896	

참 고 자 료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및 처분안 관련서류

0 관계법령 (부분발췌서)

0 정수관리 대상물품 목록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1990. 12. 27. 법률제4268호)

제 95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1991. 2. 1. 대통령령제1328호)

제 113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감모을등에 관하여 내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991. 12. 31. 법률제4473호)

제 13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 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8 생 략
9 기타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제1항 제4호내지 제9호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한다.

정수관리 대상물품목록

일련 번호	분 류 번 호	품 명	내 용 수	일련 번호	분 류 번 호	품 명	내 용 수
1	2310-003	대형승용차 (12인 이하)	6	2	2310-004-1	대형승용차 (1800cc이상)	5
3	2310-004-2	중형승용차 (1600cc이하)	5	4	2310-004-3	소형승용차 (1300cc이하)	5
5	2310-008-1	대형승합차 (35인 이상)	8	6	2310-008-2	중형승합차 (35인 미만)	8
7	2320-009-1	소형화물차 (2.5톤 미만)	6	8	2320-009-2	중형화물차 (2.5톤-4.5톤)	6
9	2320-009-3	대형화물차 (4.6톤이상)	6	10	2320-030	집승용차	6
11	2340-001	자전거	3	12	2340-003-1	모터싸이클 90cc 이하	5
13	2340-003-2	모터싸이클 90-250cc	5	14	2340-003-3	모터싸이클 251cc 이상	5
15	3610-004	운전등사기 수동	5	16	3610-015	운전등사기 전동	5
17	3610-035-1	제판기운전등 사기용	10	18	3610-035-2	제판기오프셋 인쇄기용	10
19	3610-036	제판사진기	10	20	3610-230	오프셋인쇄기	10
21	3610-237	전자복사기	5	22	3610-243	제판기종이	10
23	4110-004	냉 장 고	10	24	4240-004-2	방독면, 특수	6
25	4240-004-2	방독면, 일반	6	26	4520-055	온풍난방기	10
27	5805-601	전화기, 키폰	7	28	5815-347	모사전송기 (팩시밀리)	5
29	5820-012	카메라, TV	10	30	5825-038	수 신 기	10
31	5835-011	녹 음 기	10	32	5835-100	녹음기(VTR)	10
33	6625-019	오실로스코프	10	34	6640-013	건 조 기	10
35	6640-190	원심분리기	10	36	6650-007	투 영 기	10
37	6650-061	현 미 경	10	38	6650-082	현미경, 사진기	10
39	6675-028	청사진기	10	40	6710-001	동사진카메라	10

일련 번호	분 류 번 호	품 명	내 용 수	일련 번호	분 류 번 호	품 명	내 용 수
41	6720-001	정사진카메라	10	42	6730-001	영 사 기	10
43	6730-004	환 등 기	10	44	6730-005	투영기(OPH)	10
45	6760-063	필름판독기	10	46	7110-001	금 고	10
47	7290-024	세 탁 기	10	48	7410-002	천공기(컴퓨터용)	10
49	7420-007	전자계산기	10	50	7430-001	타자기,수동	10
51	7430-009	타자기,전동	10	52	7430-010	공판타자기	10
53	7430-020	타자기,전자	10	54	7430-025	워드프로세서	5
55	7430-204	프 린 터	10	56	7440-300-1	컴퓨터 8비트	5
57	7440-300-2	컴퓨터16비트	5	58	7440-300-3	컴퓨터32비트	5
59	7440-300-4	컴퓨터32비트 초과	5	60	7440-340	마이크로촬영 기	10
61	7440-350	판독복사기	10	62	7440-368	모 니 터	10
63	7490-014	금 액 기	10	64	7490-035	문서세단기	10
65	7730-025	카세트라디오	10	66	7810-001	탁 구 대	
67	7810-021	편 블					

